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만민법』의 도덕교육적 함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목을
중심으로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신 지 선

『만민법』의 도덕교육적 함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목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형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신지선

신지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1월

위원장 정창우  (인)

부위원장 김형렬  (인)

위원 박성준  (인)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롤스(John Rawls)의 『만민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만민법』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만민법』 관련 내용이 삽입된 단원의 서술을 분석하여, 『만민법』의 인권 개념 및 해외 원조와 국제주의에 대한 논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비판적 문해력(critical literacy)을 갖추어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롤스의 『만민법』에 나타난 국제적 정의관의 특징에 대해 논하고, 특히 『만민법』에서의 국제적 정의관이 그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의 논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롤스의 『만민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탐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서 만민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만민법』의 인권 개념을 활용하는 탐구 활동 자료를 구안하였으며, 해외 원조를 둘러싼 롤스와 지구적 평등주의자들 간의 논쟁, 국가 중심적인 롤스의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논쟁을 활용한 교과서 탐구 활동을 자료를 제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2015 개정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성과 공동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여러 이론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의 탐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모두에서 빈곤과 해외 원조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를 둘러싼 논쟁을 의무와 자선의 논쟁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 있는 점과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단순 비교와 차이점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제시될 수 있다. 『만민법』에서 인권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논의로 다루어지는 개념이지만 교과서에서 인권에 대한 롤스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만민법』의 바탕이 되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만민법』의 인권 개념 및 해외 원조와 국제주의에 대한 논쟁을 고등학교 도덕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롤스의 『만민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이해, 특히 그의 인권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권과 원조의 의무를 함께 이해하면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핵심 주장, 즉 원조의 목적 내지 범위에 대한 논의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해외 원조와 관련하여 지구적 평등을 강조했던 베이츠와 포기 등의 세계 시민주의자들과의 논쟁이 함께 소개되어야 한다. 원조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롤스와 세계 시민주의자들의 차이와 이에 대한 논쟁은 원조를 의무와 자선의 관점 중 어떤 것으로 봐야 할지와는 또 다른 성격의 논쟁으로 해외 원조에 대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과 근거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견해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지구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 문해력을 통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세계 사회를 바라보는 롤스와 세계 시민주의와의 차이점 역시 논쟁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 국가의 시민이면서 세계 사회의 시민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국경과 영토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도 권리와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 롤스의 관점과 세계 시민주의의 각각을 이해하고 어떤 면에서 어떤 관점이 더 적절한지 혹은 어떤 근거로 비판할 수 있을지 자신의 입장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에 원조에 대한 논쟁과 마찬가지로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논쟁을 통해 비판적 관점에서 각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학번: 2019-28469

* 주요 용어: 롤스, 만민법, 인권, 해외 원조, 국제주의, 세계 시민주의,
세계 시민 교육, 도덕교육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연구 문제	4
1. 연구의 구성	4
2. 연구 문제	8
제 2 장 『만민법』의 기초로서의 『정치적 자유주의』	9
제 1 절 포괄적 정의관의 대안으로서의 정치적 정의관	9
1. 정치적 정의관의 개념	11
2.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	13
제 2 절 중첩적 합의를 통한 정치적 정의관의 도출	17
1. 정치적 정의관의 공적 정당화 근거로서의 중첩적 합의	17
2. 중첩적 합의와 공적 이성	20
제 3 절 정치적 자유주의의 목표로서의 질서정연한 사회	22
1.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개념	22
2. 질서정연한 사회의 안정성	23
제 3 장 『만민법』에 나타난 국제적 정의관	26
제 1 절 이상적 이론	26
1. 자유적 만민 간의 협력의 조건	26
2. 비자유적 만민에 대한 관용과 만민법의 확장	33
제 2 절 비이상적 이론	36
1. 무법국가와 정의전쟁의 원칙	37
2. 고통 받는 사회와 원조의 의무	42

제 4 장 『만민법』에 대한 비판	45
제 1 절 만민 개념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판	45
제 2 절 해외 원조의 범위에 대한 비판과 전 지구적 정의 실현을 위한 대안적 이론	46
1. 베이츠와 포기의 지구적 평등주의	46
2. 셴의 비교적 정의관과 지구적 정의	52
제 3 절 국가주의와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	55
제 5 장 『만민법』의 도덕교육적 적용 방안	58
제 1 절 『만민법』의 세계 시민 교육적 함의	60
1. 세계 시민 교육 분류에 따른 『만민법』의 특징	60
2.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고등학교 도덕과에서의 『만민법』 활용 방향	69
제 2 절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고등학교 도덕과에서의 『만민법』 활용의 실제	72
1. 『만민법』의 인권 개념 활용	76
2.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와 세계 시민주의와의 논쟁 활용	86
3.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종합적 이해 활용	97
제 6 장 결론	106
참 고 문 헌	110
Abstract	117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롤스(John Rawls)의 『만민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만민법』의 도덕교육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만민법』 관련 내용이 삽입된 단원의 서술을 분석하여, 『만민법』의 인권 개념 및 해외 원조와 국제주의에 대한 논쟁을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 탐구 활동을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비판적 문해력(critical literacy)을 갖추고 세계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여 세계 시민성과 공동체적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해 인류는 국경을 초월하여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게 되었고, 인권, 평화, 환경, 빈곤과 기아 등과 같이 단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상호의존성과 연대 및 협력을 강조하는 세계 시민성 혹은 세계 시민 의식(global citizenship)이 요구되고 있다(김진희, 2015: 70; 박찬구, 김남준, 2016: 12-13; 박환보, 조혜승, 2016: 200; 김상범, 2016: 216-217; 손경원, 2013: 275; 민동석, 2016: 41). 이에 세계 시민주의는 국가와 국민을 넘어 세계와 인류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특정한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더불어 한 개인이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특정 공동체를 넘어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역량을 갖추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김남준, 박찬구, 2016: 3-13; 최연식, 임유진, 2016: 45).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도덕과 교과서에서도 세계 시민성과 관련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김형렬 외, 2019: 150). 제 3차 교육과정

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도덕과 교과서를 분석한 김형렬 외(2019)는 도덕과 교과서에서 국가 시민성(국가, 조국, 민족, 애국, 국민, 통일, 민주주의) 관련 키워드의 사용 빈도가 감소한 반면 세계 시민성(인권, 정의, 평화, 다문화·다양성, 세계 시민, 환경, 민주주의¹⁾) 관련 키워드의 사용 빈도가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박성춘(2016: 91-92) 또한 도덕 교과에서 통일은 남북한만의 고유한 문제가 아닌 세계 평화의 관점에서 서술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는 세계 시민성 관련 내용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고등학교 도덕과의 ‘총괄 목표’를 보면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개인이 시민 사회와 국가, 지구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를 특히 삶의 의미 물음과 연관지어 찾아볼 수 있는 능력과 실천 성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면서 학생들이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량과 실천 능력을 함양할 것을 추구한다. ‘생활과 윤리’에서는 ‘공존과 평화의 윤리’ 영역에서 ‘지구촌 평화의 윤리’를 다루면서 국제 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 분쟁, 반인도적 범죄, 국가 간 빈부 격차, 절대 빈곤 문제 등의 해결과 해외 원조 등의 윤리적 기여를 통한 지구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윤리와 사상’은 ‘사회사상’ 영역에서 ‘세계 시민과 세계 평화’이라는 주제로 단원을 구성하여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해 지구적 차원의 가치 규범과 시민윤리에 기초한 범세계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세계 시민성과 세계 시민 윤리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함양할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처럼 세계 시민성 및 세계 시민 의식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도덕과에 롤스 『만민법』의 내용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

1) 김형렬 외(2019)의 연구에서 민주주의를 국가 시민성과 세계 시민성의 범주에 모두 포함시킨 연유는 민주주의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검정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검정교과서 이전에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 속에서 남한 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했으나, 검정 이후에는 시민적 덕목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성과 쓰임에 명확한 차이를 보이므로 위 연구에서는 민주주의를 국가 시민성과 세계 시민성의 범주에 각각 구분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다. 21세기에 본격화된 세계 시민주의의 논쟁과 탈민족국가이론, 9.11 테러 이후 서구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충돌로 많은 사람들이 『만민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LP2) 266),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세계 시민성 및 세계 시민 윤리와 관련된 주제 및 쟁점을 다룰 때 또한 롤스 『만민법』의 논의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두 과목 세계 시민성 및 세계 시민 윤리의 함양을 다루는 주제와 단원에서 롤스의 『만민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롤스 『만민법』의 내용 중 해외 원조와 관련된 롤스의 주장을 삽입하여 국제 정의 및 세계 평화 실현에 관한 이론 및 방법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만민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에 비추어 볼 때, 롤스의 『만민법』은 자유주의에 대한 롤스의 신념을 기반으로 현재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만민법의 원칙들을 도출하는 한계를 지닌다. 해외 원조 역시 현재의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고통 받는 사회에 대한 정치적 원조만을 목적으로 삼는다. 롤스는 세계 사회의 성원인 각 개인들의 삶의 수준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기에 전 지구적 차원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조의 목표로 설정하는 베이츠나 포기와 같은 지구적 평등주의자 내지 세계 시민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 롤스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으로부터 자신의 『만민법』을 전개해 나간다고 하나, 국제 사회를 세계 시민 사회로 이해하는 데까지 확장하지 못한 채 국가 중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국제주의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만민법』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통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에서 학생들의 세계 시민성과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롤스의 『만민법』에 나타난 국제적 정의관의 특징에 대해 논하고, 특히, 『만민법』에서의 국제적 정의관이 그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의 논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해보았다. 다음으로 롤스의 『만민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살펴해보았다.

2) Rawls(1999), *The Law of Peoples*, 장동진, 김만권, 김기호 역(2017), 『만민법』

마지막으로, 현행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서 만민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연구 질문

1. 연구의 구성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만민법』의 배경이 된 『정치적 자유주의』의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롤스는 『만민법』을 통해 자유민주사회의 외교 정책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민주사회의 특징이라고 명시했던 국내 사회의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만민법』에서는 국제 관계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정치적 율음에 관한 합당하고 작동 가능한 관점을 제시하였다(LP 48). 『정치적 자유주의』가 한 국가의 정치적 정의관에 관한 논의라면 『만민법』은 만민의 사회 즉, 국제 사회의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논의이며, 『만민법』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만민법』의 논의를 이해를 위해서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제2장에서는 『만민법』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핵심 논의를 알아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롤스의 『만민법』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만민법』은 이상론(ideal theory)과 비이상론(non-ideal theory)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논의된다. 이에 본 장 역시 『만민법』의 구성에 따라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롤스는 ‘자유적 만민(liberal peoples)’과 비자유적이지만 ‘적정 수준의 위계적 만민(decent hierarchical peoples)’이란 두 부류의 협력적 만민에 대해 논의한다. 이상적 이론의 첫 부분에서는 ‘자유적 만

민 간의 협력 조건'을 선정하는 것을 다루며, 두 번째 부분은 자유적 만민이 비자유적이지만 평화로운 만민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적정 수준의 위계적 만민들과 '새로운 차원의 만민법'을 형성하는 단계를 제시한다(LP 98-105, 279-280). 비이상적 이론은 먼저 만민들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부정의한 전쟁을 수행하는 '무법국가(outlaw state)'와 관련하여 정의롭게 수행하는 자기방어 전쟁의 원칙을 세우는 논의가 제시한다. 이어 어려운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협력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한 '고통 받는 사회(burdened society)'와 관련하여 이상적 만민의 원조의 의무를 명시한다(LP 280). 본 장은 롤스의 『만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나, 국제 사회의 원칙을 통해 세계 평화 및 세계 사회의 안정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롤스의 저작 의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롤스의 『만민법』에 대한 비판을 고찰할 것이다. 먼저 롤스가 규정한 만민(people) 개념에 대한 비판을 보고자 한다. 롤스는 만민법을 통해 국제 사회 내의 다양한 국가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때 원칙에 합의하는 당사자들은 만민으로 이들은 한 사회의 대표자이며, 국제 사회에서의 행위 주체로 간주될 수 있다.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 주권국가를 행위의 주체로 삼은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처럼 롤스는 전통적인 주권의 개념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만민에게 주체적 지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전통적 주권의 개념이 2차 대전 이후에 쇠퇴됨에 따라 롤스가 제시한 만민과 별다른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또한 만민은 우세하고 지배적인 세력으로, 만민 개념의 사용은 소수가 누려야 할 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Buchanan, 2000; Caney, 2002; Freeman, 2006; Follesdall, 1997). 이어 베이츠(Charles R. Beitz)와 포기(Thomas M. Pogge)를 중심으로 세계 시민주의 내지 지구적 평등주의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의 의무에 대한 롤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전 지구적 정의 실현에 대한 대안적 방안으로 센(Amartya Sen)의 논의를 살필 것이다. 롤스의 『만민법』은 『정의론』에서 제시된 '차등의 원칙'을 국제 사회로 확장하려는 세계 시민주의 구상과 상이한 견해로 인해 논쟁에 직면하게 되었다(LP 291). 롤스는 자유적 만민과 적정 수준의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물질적 및 과학기술적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회들이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의 성원이 되게 할 의무를 지녔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때 원조는 고통 받는 사회의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을 통해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여 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LP 162-163), 원조를 통해 고통 받는 사회가 정의롭고 안정적인 사회가 되어 만민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도록,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드는 것이다(LP 179-181; 김남준, 20118: 334; 김준석, 2010: 20-21). 따라서 롤스가 말하는 원조는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분배 정의를 실현하여 지구적 차원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원조’를 통해 고통 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 즉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베이츠와 포기는 국내 사회가 정의로운 국내 제도를 마련하였다 해도 지구적 분배의 필요성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만민 사회의 성원들은 지구적 원칙을 통해 국내적 정의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회의 최저 수혜자의 삶을 향상시켜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롤스가 『만민법』에서 주장하는 원조는 공정성을 주장했던 이전의 이론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LP 181; 김남준, 2018: 345; 손철성, 2018: 306; 박성우, 2016: 28, 김준석, 2010: 20; 장동진, 장휘: 2003: 215-217).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센 또한 국내 사회의 정의관과 국제 사회의 정의관을 구분하는 롤스의 주장은 세계 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용이 없으며, 세계 사회 내 다양한 행위 주체들 간의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의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현실적이지도 실천적이지 못한 것으로서 현실 사회의 부정의를 제거할 수 없으며 단지 질서정연한 사회에만 적용될 수 있다. 센은 제도 중심적인 롤스의 정의관은 정의로운 제도가 없으면 개인적 삶의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개인의 역량(capacity)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비교적 정의관을 주장하며 이를 국제 사회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만민법』에 나타난 국제적 정의관이 세계 시민주의에 기반한 이상주의보다는 국가 중심의 국제적 현실을 반영한 현실주의적이고 국가주의

적인 특징을 가졌다는 비판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롤스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근거하여 자신의 국제적 정의관을 확립하고자 하였지만, 이미 자유주의 국가를 전제하면서 자유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민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롤스의 입장은 롤스가 여전히 국가간의 관계를 다루어 칸트가 제시한 국제법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고, 세계 시민법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받는다.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언급한 환대의 권리나 세계 시민으로서 개인들이 가지는 세계 시민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롤스는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손철성, 2018: 289-293). 이에 본 장에서는 『만민법』에 대한 비판을 통해 『만민법』과 롤스의 입장을 보다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만민법』의 논의와 그에 대한 비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만민법』에서 인권의 개념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상론에서 인권은 자유사회가 적정수준의 사회를 관용하는 기준이 되며, 비이상론에서 고통 받는 사회에 대한 원조와 무법국가에 대한 전쟁의 근거로 인권이 제시된다. 현행 교과서에서는 해외 원조에 대한 논의가 삽입되어 있지만, 그 근거가 되는 인권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롤스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교과 내용에 포함할 경우, 국가의 자율성의 행사와 관련된 문제들과 국제 사회의 개입과 관련된 논쟁을 탐구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만민법』의 인권 개념을 활용하는 탐구 활동 자료를 구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세계 사회를 보다 넓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외 원조를 둘러싼 롤스와 지구적 평등주의자들 간의 논쟁, 국가 중심적인 롤스의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논쟁을 활용한 교과서 탐구 활동을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생들 스스로 세계 사회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수립하고, 해외 원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해나가는 데 있어 논쟁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미 교과서에서 원조를 둘러싼 의무론의 관점과 자선의 관점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원조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세계 시민주의자들과의 논쟁 역시 함께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해외 원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역시 차이점을 비교하여 서술하는 것을 넘어서 논쟁을 통해 비판적 관점에서 각각을 탐구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만민법』의 인권 개념을 활용하는 탐구 활동 자료와 함께 만민법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쟁인 해외 원조에 대한 논쟁, 국가주의적인 만민법, 즉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논쟁에 대한 탐구 활동 예시 자료를 구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결론으로 제5장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제시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첫째, 롤스의 『만민법』에 나타난 국제적 정의관의 특징은 무엇인가? 특히, 『만민법』에서의 국제적 정의관은 그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의 논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둘째, 롤스의 『만민법』에 대한 비판은 어떤 논의들이 있는가?

셋째, 롤스의 『만민법』의 도덕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특히, 현행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서 만민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제 2 장 『만민법』의 기초로서의 『정치적 자유주의』

제 1 절 포괄적 정의관의 대안으로서의 정치적 정의관

자유롭고 평등한, 그리고 전 생애를 통하여 사회의 완전한 협동적 성원으로 간주되는 시민 상호 간에, 세대에 걸쳐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조건을 규정하는 가장 적합한 정의관은 무엇인가?(PL³⁾ 82)

합당한 다원주의를 자유제도의 불가피한 결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무엇이 관용의 근거들인가?(PL 83)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위의 두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룬다고 말한다. 이 두 가지 질문은 “합당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에 의해서 심원하게 분열되어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에 정의롭고 안정적인 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PL 83)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명명된 정의관을 제시한다. 롤스에 따르면, 이는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의 입장을 보다 일반화하고 고도로 추상화한 것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르면, 가장 합당한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조건 하에서 사람들이 상호 합의하게 되는 원칙으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승인하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가장 못 사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 허용한다.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원칙을 채택하는데, 이 때 이들은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의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한다. 무지의 베일은 자신의 재능, 계층, 가치관 등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여 보

3) Rawls(1993), *Political Liberalism*, 장동진 역(2016), 『정치적 자유주의』

다 공정한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게 만든다(JFR⁴⁾ 9, 353-354; T J⁵⁾ 35).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은 거기에서 합의된 어떤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 (중략) ...어떻게든 우리는 사람들을 불화하게 하고 그들의 사회적, 자연적 여건을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 속에 있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여러 대안들이 그들의 특정한 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그들이 몰라야 하며 일반적인 고려 사항만을 기초로 해서 원칙들을 평가해야만 한다. ... (중략) ... 그러나 그들이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들은 알고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정치 현상이나 경제 이론의 원칙들을 이해하며 사회 조직의 기초와 인간 심리의 법칙들도 알고 있다. 또한 당사자들은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줄 모든 일반적 사실들을 안다고 가정된다(TJ 195-196).

롤스는 자신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가장 정의롭고 가장 안정적이며 현대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정의론』에서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형이상학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며, 가장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는 이에 맞게 사람들을 대우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을 자율적인 본체적 자아⁶⁾의 개념으로 해석하였다(Wenar, 2012: 651). 언제나 객관적이고 공평무사한 관점을 지니는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 그러나 현실의 조건들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는 원초적 입장의 초월적 주체로서의 개인은 공동체주의자들, 특히 샌델(Michael Sandel)에 의해 강하게 비판받는다. 샌델은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개인의 속성은 롤스가 주장한 것처럼 자아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인간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이

4) Rawls, edited by Kelly(2001), *Justice as Fairness: Restatement*, 김주희 역(2016),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

5) Rawls(1999), *Theory of Justice(revised ed)*, 황경식 역(2003), 『정의론』

6) 롤스는 칸트의 이론에 근거하여 자신의 인간관을 설정하므로,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초월적 주체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이지, 칸트의 예지계나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비판한다(LL⁷) 205-206). 아울러 샌델은 정의의 두 원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규제적인(regulative) 기준이 될 수는 있어도 결코 현실적인 인간 존재자들의 특성이나 정체성을 반영하거나 현실적인 부정의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비판한다(LL 341).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 현실과 유리된 개인이 설정한 원칙으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비판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이 좋은 삶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과 같은 사적 영역에까지 적용되어 개인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치의 다원성을 부정하고, 다양한 견해들 간의 대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최기성, 2008: 35-37). 롤스를 비판하는 입장들은 롤스적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부정하고 옳음의 위상을 상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점차 다원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들의 대립과 극심한 갈등은 공동체주의의 문화적 전통이 더 이상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추상적인 정의 원칙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에 근거한 제도는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시키기에 적합하다. 롤스 역시 자유사회가 화해 불가능한 다양한 신념 체계들로 인해 잠재적 갈등을 지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의 성격 자체를 새롭게 규정하여 정치적 가치들에 한정되는 정치적 정의관(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을 제시한다(Wenar, 2012: 663-664; 유주현, 2004: 218).

1. 정치적 정의관의 개념

『정의론』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포괄적인 도덕적 신념 체계인지 혹은

7) Sandel(1998), *Liberalism and Limits of Justice*, 이양수(2012) 역, 『정의의 한계』

정치적 정의관인지를 전혀 논의하지 않으며, 한 곳에서(Theory, 3: 15) 만약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상당히 훌륭하게 성공한다면 다음 단계는 “공정으로서의 옳음”이라는 이름으로 제안되는 보다 일반적인 견해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의론』에서 자세하게 검토되는 문제들이 정치적·사회적 정의의 전통적이고 친숙한 문제들이지만, 독자들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만약 [정의관으로서] 성공한다면 나중에는 포괄적인 도덕적 신념 체계로 발전될 수도 있는 것의 일부로 시작되었다고 합당하게 결론 내릴 수 있다(JFR 16).

내가 『사회 정의론』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또는 충분히 강조하지 못한 점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정치적 정의관으로서 의도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정치적 정의관은 도덕적 개념이지만, 이것은 정치·사회·경제 제도라는 특정한 종류의 대상을 위하여 구성된 도덕적 개념이다. 특히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내가 현대 입헌 민주 국가의 기본구조라고 명명한 것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TJ 108).

정치적 정의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요한 특징을 지닌다. 첫째, 정치적 정의관은 정치·사회·경제 제도, 즉 롤스가 사회의 기본구조라고 부르는 것에 적용하기 위해 구성된 도덕적 개념이다. 둘째, 정치적 정의관은 포괄적 교리의 일부분이거나 포괄적 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사회의 기본구조에만 작용하는 합당한 관점을 정교화할 뿐이다. 셋째, 정치적 정의관의 내용은 민주사회의 정치적 전통 내에서 출발하여 세대를 거쳐 사회가 공정한 협동 체계라는 것을 근본 개념으로 여기는 것에 근거한다(PL 95-96). 다시 말해, 정치적 정의관이란 사회의 기본구조에만 적용되는 정의관으로서, 공적인 부분에서만 작동하는 정의관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적인 삶의 영역, 예를 들면 종교적 신념이나 좋은 삶과 행복에 대한 가치 판단 등은 개인의 몫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하나의 정의관에 의해 규정될 수 없다.

롤스는 민주사회의 정치문화는 항구적으로 화해 불가능한, 상충되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완전히 합당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합당한 교리들의 다원성은 자유제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성능력에 의한 불가피한 결과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한 롤스는 『정의론』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교리(the doctrine of justice as fairness)를 정치적 정의관으로 변형하는데, 이 작업은 포괄적⁸⁾ 교리인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형성하는 부분적인 구성적 발상들을 정치적 개념으로 변형할 것을 요구한다. 『정의론』에서는 포괄적 교리들과 정치적 관점과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론』에서 부분적인 구성적 발상의 일부는 종교적, 철학적, 또는 도덕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로서 현대 자유민주사회를 특징지우며, 상충하는 합당한 포괄적 신념들과 구분되는 정치적 정의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하나의 포괄적 신념 체계로서의 자유주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포괄적 신념 체계들 간의 중첩적 합의의 대상인 정치적 정의관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이 롤스는 정치이론은 포괄적인 성격을 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정치적인 영역에만 적용되는 정의관은 다른 포괄적 이론들과 대립하거나 경쟁하지 않는다. 더불어 정치적 정의관은 정치철학적 진리성을 요구하지 않고 포괄적 교리로서의 성격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미 사회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포괄적 이론들로부터 승인될 수 있다(유주현, 2004: 218).

2.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

롤스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정치적인 가치에만 한정되는 정의관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당하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가치에 대한 하나의 기준은 존재할 수 없고, 합당한

8) 하나의 이론이 포괄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현실적 삶의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 타당한 참된 이론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이론이 이에 해당된다.

개인들이 저마다 가지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들 간의 갈등은 영구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적 신념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불교적 신념을 추구하는 사람 간에 신념의 일치가 가능한가? 이들이 하나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게 하는 원칙을 만들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사회를 협동체로 바라보고 이를 지속하고자 하는 합당한 개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무엇인지를 아는 합리적인 개인이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규정하는 원칙을 만들어내지만, 이들은 절대로 합의될 수 없는 영역, 하나의 원칙으로 규정하려면 억압과 폭력의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기독교인이 불교적 가치를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게 하거나 반대로, 불교인에게 기독교 교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는 것은 억압적인 행위이며, 이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협동체로서의 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 롤스는 종교나 철학, 도덕적 신념은 개인 삶의 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합당하면서 합리적인 개인은 각자 나름의 포괄적 신념을 가지며 이들의 신념은 일치하기도 상충하기도 한다. 각각의 포괄적 교리는 다른 포괄적 교리와 공존하는 또 다른 포괄적 교리일 뿐이다.

이러한 다원화된 현대 민주사회의 특징으로부터 롤스는 정의관이란 개인들의 사적인 삶과 관련되는 포괄적 교리에 적용될 수 없고, 사적인 영역과 분리된 시민적 삶의 영역, 즉 공적인 정치적 영역에만 한정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합당한 것과 합리적인 것

합당한 것과 합리적인 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평등한 존재들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란 확신을 전제로, 공정한 협동의 조건으로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준수하려 할 때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어떤 규범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기에 합당하며,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합당한 것은 공정한 협력 체계로서의 사회의 한 요소이다. 또한 공정한 협력의 조건들을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합당한 것으로 여겨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성의 한 부분이 된다. 이에 합당하다는 것은 상호성을 충족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합당한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합당한 개인은 또한 합리적이다. 합리성은 숙고 능력을 지닌 한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합리성은 목적과 이익이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어떤 목적이 어떻게 우선성을 지니게 되는지 역시 설명한다. 즉 합리적인 개인은 수단과 목적을 계산할 뿐만 아니라, 여러 목적들 간의 일관성과 상호보완성의 유지를 검토한다.

합당한 것과 합리적인 것은 구분되는 독립적인 개념으로, 어느 것이 다른 것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합당한 것과 합리적인 것은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어느 것도 다른 것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만약 합당하기만 할 경우, 개인은 공정한 협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자신만의 목적을 설정할 수 없다. 반면에 합리적이기만 할 경우, 정의감을 결여한 개인은 타인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다.

합당한 것과 합리적인 것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합당한 것은 공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평등한 존재로서 개인이 공적 세계에 들어가 공정한 협력의 조건을 제시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은 합당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게다가 합당한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평등한 개인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리란 믿음을 전제로 협력의 조건을 제시하고, 수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당한 사회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성인들의 사회가 아니고, 자신의 목적과 이익만을 고려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사회도 아니다. 합당한 사회는 평범한 인간세계의 한 부분일 뿐이다.

각 개인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존재들이지만, 이들은 항상 같은 종류의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즉 합당하고 합리적인 개인들 간의 의견 불일치가

생겨날 수 있다. 그 이유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판단의 부담(the burdened of judgement)⁹⁾으로 인해 서로 다른 종류의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각 개인들은 합리적 존재로서 다양한 목적들 간의 경중을 따져보고, 자신의 삶에서 이 목적들이 차지해야 할 적절한 위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때, 개인들은 합리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한편, 합당한 개인은 타인의 주장을 자신과 상호관계, 사회제도 및 관행 속에서 그 설득력을 판단해야 하나, 이 모든 것을 신뢰할 만한 합당한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2)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

롤스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을 민주주의의 영구적인 특징으로 규정한다. 이는 공정한 정치 및 사회적 조건 하에서 각각 합당하나 상충하는 다양한 포괄적 교리들이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

롤스의 후기 사상에서 포괄적 교리(comprehensive doctrine)와 정치적 정의관(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도덕관이 포괄적이라는 것은 그 이론이 한 개인의 인생 전반에 걸친 가치들과 사적 관계에 관한 이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인간관 및 가치관을 모두 포함하는 종교적 교리나 공리주의,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철학적 교리가 포괄적 교리에 해당된다(김은희, 2010: 244).

판단의 부담으로 인해 합당한 개인들 모두가 동일한 포괄적 교리를 수용하지 않는다. 즉 합당한 시민들은 각기 다른 합당한 포괄적 교리를 가진다. 합당한 개인이 가진 종교적, 철학적 신념 체계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다를 수 있고, 이는 다른 교리들과 함께 존재하는 포괄적 교리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합당하다고 믿을 것이다.

9) 이성과 판단의 힘의 행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덕적·정치적인 삶의 과정에서 개인의 이성과 양심적 판단을 행사하는 사람들조차 포괄적인 물음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양화식, 2011: 495).

한 사회 내에서 합당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합당한 포괄적 교리는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가치에 한정되는, 정치적 영역에만 적용되는 정의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 2 절 중첩적 합의를 통한 정치적 정의관의 도출

1. 정치적 정의관의 공적 정당화 근거로서의 중첩적 합의

화해 불가능한 합당한 포괄적 교리를 가진 개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정의관, 개인의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을 제외한 정치적 영역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정의관은 어떻게 도출되는가?(PL 246)

정치적 영역에만 적용되는 정의관은 좋은 삶에 대한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교리들을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정의의 원칙은 특정한 포괄적 교리를 전제하지 않으며, 포괄적 교리들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시민적 삶의 방식을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포괄적 교리들과 무관하게 입헌민주사회의 공통된 신념들에 의해 정의관을 도출하는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가 필요하다.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은 입헌사회의 제도 내에서 인간 이성을 발휘한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중첩적 합의를 통한 정치적 정의관을 형성하는 것은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 자체에 호소해야 한다.

중첩적 합의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채택한 정의의 원칙이 현실세계의 시민들이 가진 도덕적 능력과 그들의 고차원적인 관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양화식, 2012: 500). 정의론의 원초적 입장이 비

판 받은 이유는 현실로부터 유리된 채 존재하는 무연고적 자아들 간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협력의 조건이 현실사회의 기본구조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의의 원칙이 과연 현실 세계의 문제를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이 같은 정의의 원칙이 현실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공정한’ 협력의 조건인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중첩적 합의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합당하고 합리적인 시민들이 합의하는 대상은 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합당한 종교적, 철학적, 그리고 도덕적 신념들은 그 자체로 인정되며, 이것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의 원칙이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에도 적용된다면, 정치권력을 사용하여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을 억압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정치적인 영역에 한정되는 정의관은 한 개인의 사적 영역은 각각의 합당성을 가진 가치관의 문제로 보고, 시민들의 공적 생활과 관련된 영역에만 적용되는 정치적 정의관을 통해 합당한 포괄적 신념들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 정의와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따라서 정치적 정의관은 특정한 종교적, 형이상학적 교리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에 부합되고 포괄적 교리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이 때 정치적 정의관은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에서 일시적인 안정성을 위한 ‘잠정적 타협(modus vivendi)’의 산물이 아니다. 잠정적 타협이란 끊임 없는 분쟁과 혼란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Mandle & Reidy, 2015: 588). 잠정적 타협은 16세기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관용의 상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두 종교 모두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적 교리의 확산을 막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때는 관용의 원칙에 대한 중첩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를 관용한다는 것은 잠정적 타협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두 종교 중 어느 한 쪽의 세력이 우세해질 경우, 상대에 대한 억압과 박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용의 원칙은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잠정적 타협은 목표와 이해가 상충되는 두 국가 간의 조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두 국가가 조약을 맺을 때, 조약의 조건이나 문

구는 조약을 위반하거나 파기하는 행위가 두 국가 중 어느 국가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때 조약의 준수는 국익에 합치되는 것이기에 조약이 지속되는 것이나, 국익의 관점에서 조약의 준수가 이롭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이를 위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 간의 조약은 잠정적 타협에 불과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개인과 집단의 이익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 거래 역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 가능하므로 잠정적 타협에 해당된다. 잠정적 타협에 의한 사회적 화합은 외형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화합을 통해 달성한 안정성은 환경적 우연성에 좌우된다.

그러나 중첩적 합의는 잠정적 타협과 구별되는 세 가지의 특징을 지닌다. 첫째,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되는 정치적 정의관은 그 자체로 도덕적이다. 둘째, 중첩적 합의는 도덕적 근거를 가진다. 합의의 당사자들은 단지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익을 절충하기 위하여 특정 권위나 질서에 따라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포괄적 신념에 근거하여 정치적 정의관을 받아들인다. 셋째, 중첩적 합의는 사회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잠정적 합의의 경우, 안정성은 환경적 우연성과 상대적인 힘의 균형에 의해 획득되나, 중첩적 합의에 의한 정치적 정의관은 정치권력의 변동과 무관하게 지지되어 공정한 협력 체계로서의 사회에 안정성을 가져온다(PL 263-167; 홍성우, 1996: 334-341; 이봉철, 2015: 327-330).

중첩적 합의는 과연 얼마나 깊숙하게 시민들의 포괄적 교리 속으로 들어가는가? 그것이 적용되는 제도의 넓이(범위)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가?(PL 267)

롤스는 중첩적 합의의 깊이와 넓이(the depth and breadth of an overlapping consensus)의 설정을 통해 정치적 정의관이 현실사회에서 타당한 정의관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중첩적 합의의 깊이는 현실사회에 밀접하게 관계된다. 중첩적 합의는 근본적인 개념들에까지 적용되며 이 근본적인 개념들 내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구안된다. 합의는 사회관과 시민관의 개념에까지 적용된다. 다시 말해 중첩적 합의는 사회가 공정한 협력 체계라는 점과 시민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점과 관계된

다. 중첩적 합의의 넓이는 민주적 절차를 제도화하는 정치적 원칙들과 가치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구조 전체에 적용되어 양심 및 사상의 자유 같은 실제적인 권리들과 함께 기회의 평등과 본질적 필요들을 주관하는 원칙들에까지 적용된다. 롤스가 설정한 중첩적 합의의 깊이와 넓이는 “타당한 현실적 가정들에 부합하며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깊고 넓은 정치관은 무엇인가?”(PL 266)라는 질문을 통해 정치적 정의관이 가장 합당한 사회적 화합의 기초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피력한다(PL 266-267, 286).

2. 중첩적 합의와 공적 이성

‘공적 이성(public reason)’이란, 다원적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헌법의 본질과 기본구조의 문제를 결정할 때 사용해야 하는 공통적인 추론의 형태로, 다원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공정한 사회 협력의 이상을 실현하게 한다. 롤스는 이것이 민주주의 그 자체의 개념 중 일부(part of the idea democracy itself)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Mandle & Reidy, 2015: 666).

정치사회는 물론, 사실상 합당하고 합리적인 모든 행위자는, 이들이 설사 개인, 또는 가족이나 협회, 아니면 심지어 정치사회들의 연맹이든 간에, 각기 자신의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중략) 정치사회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란 실상 이들이 행사하는 이성이며, 이것들을 수행하는 능력 또한 이성이다. 이성이란 지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능력인데, 이는 인간 개개인의 능력에 내재해 있다(PL 345).

롤스는 모든 이성이 공적 이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시민사회의 교회나 대학, 그 외 많은 협회에서 사회의 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 문제는 공중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지도자에 의해 다루어지며, 이는 비공적 이성(the nonpublic reasons)의 사용으로 여겨

진다.

공적 이성은 시민들의 이성이다. 시민들은 공중의 선(the good of public)을 실현하고자 사회의 기본구조 및 근본적 정의 문제에 대해 판단한다. 이때 공적 이성의 주제와 내용인 공중의 선과 사회 정의의 문제는 그 사회의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표현된 이상과 원칙들에 의하여 주어지고 이것에 입각하여 공개적으로 검토되어 행해진다(PL, 346).

타인에게 우리의 정치적 판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공적 이성을 통해, 즉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에 적합한 추리와 추론의 방식을 통해, 그리고 타인들도 인정하는 합당한 믿음, 근거 그리고 정치적 가치에의 호소를 통해 그들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공적 정당화는 어떤 의견 일치(consensus)로부터, 즉 자유롭게 평등하며 완전히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다고 가정되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모든 당사자가 공유하고 자유롭게 지지하는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전제로부터 나아간다(JFR 63).

중첩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정치적 정의관은 공적 이성의 내용을 구성한다. 즉 공적 이성의 내용은 정치적 정의관에 의하여 정식화되며(김은희, 2010: 246), 중첩적 합의는 공적 이성에 논리적으로 선행되는 것으로(양화식, 2012: 506) 이해된다. 따라서, 중첩적 합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공적 이성은 다양한 포괄적 교리를 가진 시민들 간의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준이 된다. 반면, 중첩적 합의를 얻지 못한 정치적 정의관에 근거한 공적 이성은 정치적 기준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공적 이성이 시민들 간의 분쟁 상황에서 공적 정당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공적 이성의 내용이 되는 정치적 정의관을 자발적이고 이성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김은희, 2010: 267-268).

제 3 절 정치적 자유주의의 목표로서의 질서정연한 사회

1.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개념

합당한 종교적, 철학적 및 도덕적 교리들로 심각하게 분열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에,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당기간 유지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PL 83)

화해 불가능한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이 존재하는 사회를 정의롭고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들 저마다의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들이 지지할 수 있는 공적인 영역에만 적용되는 정의관이 요구된다.

롤스의 초점은 사회의 기본 구조의 정의에 맞춰져 있다.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에 적용되는 공정한 원칙을 통해 공정한 협력 체계로서의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의론』의 목적이었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의 정의관은 정치적인 영역에만 적용되는 공정한 원칙으로 그 성격이 변하였으나, 목표인 사회의 안정성에 대한 입장은 유지된다. 롤스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시민들이 갈등하고 분열되기 보다는 조화와 화합을 통한 사회 안정과 정의를 추구하고, 공정한 정의의 원칙이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어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라고 명명한다.

질서정연한 사회-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사회-라는 근본 관념은 공정한 협력 체계로서의 사회라는 핵심적인 구성적 관념을 구체화하는 데 이용되는 동반 관념이다(JFR 33).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관념을 통해 공정한 협력 체계로서의 사회라는 이상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까지 지속되게 하는 공적으로 승인된

정의관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때 정치사회가 질서정연하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첫째, 공적 정의관이 공적 합의 사안이라는 것을 구성원 모두가 알고 인지하고, 둘째, 공적 정의관에 의한 규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 원칙을 충족한다는 것을 뜻하며, 셋째, 시민들이 가진 실질적인 정의감에 따라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고, 시민들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정치적 정의관, 예를 들어 특정한 자연권의 신념 체계나 공리주의의 한 형태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수용하며 다른 모든 이도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할 때처럼 우리가 특정한 정의관에 의한 질서정연한 사회에 대해 말할 때에는 이 관념이 특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을 전제할 때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포괄적 신념 체계를 수용하는 질서정연한 사회는 불가능하다는 데에 주목하라(JFR 34).

질서정연한 사회가 어떤 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사회라고 규정할 경우, 서로 다른 포괄적 신념을 지닌 시민들의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이 승인하고 사회를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 정의관은 존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포괄적 교리는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만약 포괄적 교리가 한 사회의 정의관으로 채택될 경우, 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합의의 산물이 아닌 전제적이고 폭력적인 권력의 산물로 시민들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할 것이다. 서로 다른 포괄적 교리를 지지하는 민주 시민들은 오직 정치적 정의관에만 합의할 수 있으며, 정치적 정의관만이 사회 통합의 가장 합당하고 충분한 기반을 제공한다.

2. 질서정연한 사회의 안정성

롤스는 정치적 정의관의 개념을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의미를 재정립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고려사항들을 제시하면서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안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정성(stability)은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채택하기 위해 고려된다. 롤스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회 협력과 통합으로 질서정연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이러한 사회 속에서 성장한 시민들은 사회 제도를 따르고 지지할 만한 동기를 부여하는 정의감과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충성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Costa, 2012: 26).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다른 방식으로 안정성과 관련된다. 안정적인 관점을 찾는 것은 단지 무익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안정성의 종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안정시키는 힘들의 성격이다. 우리의 생각은 합당한 인간 심리와 정상적인 인간 삶의 조건을 규정하는 어떤 가정들을 전제할 때, 정의로운 기본 제도 하에서-공정으로서의 정의 자체가 명령하는 제도 하에서-성장하는 이들은 그 제도를 안정시키기에 충분한, 합리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충성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정의로운 기본 구조 하에 살아감으로써 형성되는 시민들의 인격과 이익을 전제할 때 그들의 정의감을 부정의로 향하는 대개의 경향들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강하다. 시민들은 기꺼이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정의를 베풀고자 행동한다. 안정성은 정의로운 제도 하에서 갖게 되는 적절한 종류의 충분한 동기에 의해 보장된다(JFR 323-324).

합당한 인간심리와 인간생활의 정상적인 조건들은 규정하는 특별한 가정을 전제로 하여 정의로운 기본적 제도 하에 성장한 사람들은 정의감을 획득하고, 이러한 제도들이 충분히 안정적일 수 있도록 이성적 추종(reasoned allegiance)을 하게 된다. 달리 표현하면, 정의로운 기본구조 속에서 형성된 시민들의 개성과 관심들의 특성을 전제하면, 시민들의 정의감은 불의에 저항하기에 충분한 힘을 갖게 된다는 말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민들은 상호 간에 정의가 정착되도록 기꺼이 노력한다. 정의로운 제도 하에서 획득되는 그러한 종류의 동기는 안정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PL 258).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당하고 합리적인 시민들의 중첩적 합의에 의해 도

출된 정의관이 시민들의 공적 이성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정의관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또한 이는 다양한 신념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바탕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요구되는 안정성은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견해에 근거한다. 따라서 화해 불가능한 포괄적 교리를 가진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정의관은 자유주의적이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자유주의적 특징은 입헌정체의 정치권력의 특징과 연관되어 있으며, 정치권력의 행사와 안정성의 관계를 유추하게 만든다. 안정성의 문제는 특정한 관점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이러한 관점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 각자의 이성애 호소하여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강제력에 의한 특정 관점을 수용하게 하는 정치권력은 그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적 이성애 호소해야 한다. 아울러 공적 이성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자유주의적 입헌정체, 즉 질서정연한 사회는 그 사회의 시민들의 정의감과 충성심에 의해 세대 간의 협력과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제 3 장 『만민법』에 나타난 국제적 정의관

제 1 절 이상적 이론

1. 자유적 만민 간의 협력의 조건

롤스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국제 사회의 정의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만민법』을 저술하였다. 롤스는 만민법을 “국제법 및 국제관행의 원칙과 규범에 적용되는 옳음과 정의에 기초한 특수한 정치관(LP 19)”으로 규정하는데, 그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적용하여 만민법이라는 국제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국가들 간의 외교 정책의 기틀을 제시하고, 국제적 협력과 관용을 바탕으로 한 국가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꾀하였다.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를 거쳐 『만민법』으로 이어지는 롤스의 논의는 국내 사회의 공정성(fairness) 확보를 통해 국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장하여 국제 정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박정원, 2014: 314).

인류 역사에서 저질러진 크나큰 죄악들-부당한 전쟁과 압제, 종교적 박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거부, 기아와 가난, 인종말살 및 대량학살- 모두는 정치적 부정의에서 유래하였으며, 그 잔인성과 만행은 이루 형언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정치적 정의 개념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논하였던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며, 정치적 자유주의로부터 만민법의 이론을 발전시킨다(LP 24).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계약의 발상을 활용하였던 것처럼 롤스는 만민법에서도 사회계약의 개념을 국제 사회로 확대하여 자신의 논의를 전개한다. 『만민법』은 크게 두 부분, 이상적 이론(ideal theory)과 비이상적 이론(non-ideal theory)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상적 이론과 비이상

적 이론 또한 각각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롤스는 국제 사회 내 존재하는 국내 사회를 5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이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로 특정 지어진 자유사회의 정치적 정의관을 만민법의 논의로 확장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합당한 다원주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로부터 전개되었다. 각각의 고유한 특수성을 지닌 사회들 간에 만민법의 내용이 보편적으로 작동하려면 합당성을 기준으로 세계 사회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장동진, 장휘, 2003: 210). 이에 롤스는 합당한 자유적 사회(reasonable liberal societies),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decent hierarchical societies), 무법국가들(outlaw states),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 받는 사회(societies burdened by unfavorable condition), 자애적 절대주의 사회(benevolent absolutism)로 구분한다. 이 중 자유적 사회와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의 만민들은 만민 사회의 성원으로 질서정연한 만민(well-ordered peoples)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론과 비이상론은 5가지 형태의 국가들 상호 간에 만민법의 원칙이 적용되고 실현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세계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만민법의 준수를 통해 합당하고 정의로운 만민의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상적 이론은 질서정연한 만민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만민법에 관한 이론으로 국내적 정의론을 자유적 사회들에 확장하는 문제, 다시 말해 만민법의 형성에 대해 다루며, 아울러 자유적 사회의 원칙을 적정 수준의 만민들로 확대하는 문제, 만민법을 근거로 평화를 유지하고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만민들에 대해 다룬다. 비이상적 이론은 만민법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무법국가와 불리한 여건들로 인해 질서정연한 체제를 만들지 못하는 고통 받는 사회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를 다룬다(LP 21-22; 박정원, 2014: 315; 송경호, 2012: 155).

1) 현실주의적 유토피아로서의 만민법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회세계가 하나의 합당하게 정의로운 입헌민주주의(a reasonably just constitutional democracy)를 합당하게 정의로

은 만민의 사회(a reasonably just society of Peoples)의 성원이 되어 존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 달려있다(LP 32).

롤스는 합당하게 정의로운 입헌적 민주사회들을 만민의 사회의 성원으로 존속하게 만드는 사회세계에 대한 신념으로부터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정하면서 이 같은 세계에서는 질서정연한 만민들 간의 평화와 정의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과거 및 현재의 악행이 우리의 미래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자유적 및 적정 수준의 만민들의 사회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는 희망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도록 해선 안된다. ... (중략) ... 만민 상호 간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정치적 옳음과 정의에 관한 합당하고 작동 가능한 관점을 발전시켜 우리의 희망을 지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칸트를 이어 우리가 이미 형성한 합당한 정의로운 입헌민주주의의 정치관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연후에 우리는 이 정치관을 자유적 및 적정 수준의 만민의 사회로 확대할 수 있다. ... (중략) ... 정치적 자유주의로부터 합당한 만민법을 발전시키는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합당성을 확장하는 것이다. 입헌민주정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적정 수준의 정치사회들의 근본적 이익들이 이 만민법을 지지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열망이 아니며 합당한 희망이 될 수 있다(LP 48).

만민 사회의 기초가 정치적 자유주의의 체계 내에서 발전한다고 본 롤스는 합당하게 정의로운 입헌민주주의의 이상, 즉 자유주의적 정의가 국제사회에서 완벽하게 구축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유주의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일련의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국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박정원, 2014: 314-315; 김태환, 2015: 3,189-3,190).

롤스는 지금은 아닐지라도 보다 나은 환경을 갖춘 미래에서는 이러한 사회가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가능한 세계, 현실적인 것으로 한계 지을 수 없는 가능한 세계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LP 33).

롤스는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 논의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자유적 사회와 완전한 의미에서 자유적 사회라고 할 수 없어도

나름의 적정성을 지닌 사회 간의 공존을 위한 원칙을 설정하였다(박정원, 2014: 315).

합당하게 정의로운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는 자유주의적 사회 또는 적정 수준의 국내적 사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현실주의적이다(LP 40).

합당하게 정의로운 만민법은 만민의 사회에 적용되는 합당하게 옳고 정의로운 정치 사회적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치적(도덕적) 이상, 원칙 및 관념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이다(LP 41).

롤스는 자신의 이론이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세계를 묘사한다고 믿는다. 그는 현실주의적 유토피아(a realistic utopia)로서 합당하게 정의로운 입헌민주사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이러한 현실주의적 유토피아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건들이 만민법을 존중하는 합당하게 정의로운 적정 수준의 국민들의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여 만민의 사회가 현실주의적 유토피아의 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Wenar, 2012: 677).

2) 왜 만민(people)인가

롤스는 『만민법』에서 자유적 국민과 적정 수준의 국민을 만민 사회의 행위자로 여기는데, 이는 시민들을 국내 사회의 행위자로서 간주하는 것과 같다. 국제 사회 내 개별 국가들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만민법을 도출하기 위해 롤스는 만민을 합의의 주체로 설정한다. 다시 말해, 만민은 정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합당한 행위를 하는 개인들 혹은 개인의 집합을 의미하고, 만민법이 실행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행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롤스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 즉 모든 국가나 인종, 민족을 아울러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간의 쟁점을 고려한 정의의 원칙을 세우고자 하였다. 롤스는 현실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만민법

의 이론을 전개하나 국가보다는 만민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 이유는 만민의 개념을 통해 만민에게 도덕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장동진, 2001: 318-319; 최기성, 2009: 60; 김태환, 2015: 3,192).

자유적 만민은 공통의 동정심(common sympathy)을 가지고 결속되는 시민들로, 자신들의 근본적 이익들을 실현하게 하는 합당하게 정의로운 입헌 민주정부에 속해 있다. 또한 자유적 만민은 도덕적 본성을 지닌 합당하고 합리적인 존재로서 다른 만민들에게 공정한 협력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들이 이 조건을 준수하리라는 확신이 생긴 경우, 자신들도 이 조건을 존중한다.

롤스가 국제 사회의 행위자로 주권국가가 아닌 만민을 설정하는 이유는 만민은 전통적인 주권국가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행위의 주체는 개별 국가로 인식되지만, 롤스는 주권 국가의 팽창주의적 성격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특성이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므로 국제 사회의 행위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여겼다.

만민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제법에서 수용된 전통적인 주권을 지니는 정치국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또한 주권은 국민을 대하는 데 있어 일정한 자율성을 허용하는데, 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자율성은 옳지 않다(LP 51-52).

도덕적 본성을 지닌 합당한 만민은 자신의 이익을 무한대로 추구하지 않고 적절하게 제한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합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 즉 만민은 자국과 타국의 입장을 합당하게 고려하여 국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 판단하고 행위하기 때문에 합당한 자유적 입헌 정치를 확립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만민의 사회,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제 사회 관계를 이룩할 수 있다(LP 49-56; 김만권, 2004: 274-275; 최기성, 2009: 61-62).

3) 이상적 이론의 첫 번째 부분: 자유적 만민 간의 협력의 조건

본 장은 이상적 이론의 첫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자유적 만민 상호 간에 적용될 정의의 원칙을 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만민법』에서 원초적 입장은 합의의 장치로서 채택되는데, 롤스는 두 개의 원초적 입장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원초적 입장은 (1) 자유주의 사회의 시민들이 자신들 사회의 기본구조에 적용되는 정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 (2) 자유주의 국민들 상호 간에 적용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 (3) 자유적 만민들의 정의 원칙을 비자유적이지만 적정 수준의 사회에 확장하기 위해서 세 차례 채택된다고 볼 수 있다(장동진, 장휘, 2003: 212-213).

(1)과 (2)는 이상적 이론의 첫 단계에 관한 것이므로 본 장에서 면밀히 살피고, (3)은 이상적 이론의 두 번째 부분에 관한 설명에서 보다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1) 두 개의 원초적 입장

사회계약이란 자유주의적 발상을 만민법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지의 장막을 지닌 원초적 입장이 자유적 사회에 적용되는 대표의 모델이라는 점에 주목해보자. 내가 지금 첫 번째 원초적 입장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지금 여기에 있는 너와 나-가 해당 당사자들에게 공정하고 합당한 조건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모델화한다. …(중략)…

첫 번째 원초적 입장에서 롤스는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채택했던 방식대로 자유적 만민들은 자신들의 사회 구조에 적용할 정치적 정의관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치적 정의관은 합당하나 상이하고 상반되는 포괄적 교리들을 인정하는 시민들 간의 중첩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다. 민주사회의 공적 정치문화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근본적 개념에서부터 정의관의 내용이 구성되고, 사람들의 포괄적 교리를 무지의 베일로 가림으

로써 중첩적 합의의 초점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정의관을 찾게 된다.

국내적 정의관이 형성되고, 다음 단계에서 원초적 입장이 다시 사용된다. 두 번째 단계의 원초적 입장은 자유적 관점을 만민법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 역시 대표의 모델이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도 적절한 이유를 통해 만민법을 구체화하기로 하는 합의의 당사자들, 즉 자유적 만민의 합리적 대표자들이 공정한 조건으로 여기는 것을 모델화하기 때문이다.

만민법에서의 무지의 베일을 쓴 합의 당사자들-자유적 만민의 대표-은 입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합당한 우호적 조건들과 자신들이 자유주의 사회를 대표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자신들의 사회의 영토나 인구의 규모, 자연자원의 추정매장량이나 경제발전의 수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 이들에게 자신들의 사회의 구체적 특징에 대한 정보는 차단되나, 이들이 자유주의 정의관에 근거한 근본 이익과 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일반적 조건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장동진, 2001: 322).

두 번째 원초적 입장은 다음의 5가지 특징을 충족시킨다. 한 국민의 대표자들이 (1)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합당하고 공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2) 합리적이다. (3) 이들은 만민법-만민들 상호간 관계의 기본구조를 관장하는 법-의 내용에 관하여 논의하고, 4) 이들의 논의는 올바른 이유를 근거로 하여 진행된다. 5) 만민법의 원칙은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근거하여 선정되는데, 근본적 이익은 자유적 정의관을 통해 규정된다(LP 61).

(2) 만민법의 원칙들

우리는 자유적 민주사회들에게만 적용되는 만민법을 고안해내는 일은 아주 친숙한 만민 간의 평등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LP, 65).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이고 합당한 자유적 만민들의 대표들은 두 번째 원초적 입장을 통해 자유적 만민 사회 상호 간에 적용되는 원칙-국제적 기본 구조의 질서를 위한 8가지 원칙을 선택한다(LP 66-67).

1. 만민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이다. 이들의 자유와 독립성은 다른 만민들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2. 만민은 조약과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3. 만민은 평등하며 자신들을 구속하는 약정에 대한 당사자가 된다.
4. 만민은 불간섭의 의무(duty of non-intervention)를 준수해야 한다.
5. 만민은 자기방어의 권리(the right of self-defense)를 갖는다. 그러나 자기방어 이외의 이유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는 없다.
6. 만민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7. 만민은 전쟁 수행에 있어 특별히 규정된 제약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8.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및 사회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여건 하에 살고 있는 다른 만민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

위의 8가지 원칙(특히 1원칙에서 7원칙)은 현재 국제 질서와 유사하며, 몇몇 원칙(특히 4원칙에서 8원칙)은 자유적 혹은 적정 수준의 국가가 아닌 무법국가와 고통 받는 사회와 같은 비이상적인 세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Wenar, 2012: 674). 롤스는 만민법의 8가지 원칙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목록에 있는 원칙들 역시 상세한 설명과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원칙들 중 일부는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에서는 피상적일 뿐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롤스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질서정연한 만민이 자신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특정의 정치적 정의의 기본적 원칙들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만민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한다(LP 67).

2. 비자유적 만민에 대한 관용과 만민법의 확장

1) 비자유적 만민(non-liberal peoples)에 대한 관용

장동진, 장휘(2003)에 따르면, 롤스는 자유적 만민들의 정의 원칙을 비 자유적이지만 적정 수준의 사회에 확장하기 위해 원초적 입장을 채택한다. 이 때의 원초적 입장은 이전의 두 번과는 차이점을 가진다. 왜냐하면 비자유적이지만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의 경우, 이 사회의 기본구조의 형태를 도출하기 위한 원초적 입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민법』에서 원초적 입장은 자유주의 사회들을 위해 두 번-한번은 국내적 차원, 다른 한번은 만민법의 차원-에서 사용되고,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들을 위해서는 두 번째 수준에서만 한 차례 사용된다(LP 113-114).

자유적 만민들과 비자유적 만민들 간의 합의는 서로 간의 공유하는 원칙을 새로 만들기 위한 합의가 아니라 만민법을 비자유적 만민에게로 확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자유적 만민이 비자유적 만민을 어느 정도까지 관용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자유적 만민들은 최소한의 인권의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비자유적 사회의 수준을 설정하고 그들을 관용한다(LP 98; 장동진, 장휘, 2009: 213).

관용한다는 것은 한 국민의 고유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치적 제재-군사적, 경제적 또는 외교적-의 행사를 자제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관용한다는 것은 이러한 비자유적 사회들을 만민들의 사회의 우호관계에 참여하는 동등한 성원으로 인정함을 의미한다. ... (중략) ... 만약 모든 사회들이 자유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정치적 자유주의의 발상은 사회의 질서를 형성하는 다른 용인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해 (내가 가정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면) 적절한 관용을 표현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LP 98-99).

롤스는 자유적 사회에서 합당한 정치적 정의관이 포괄적 교리들이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구되듯이 비자유적 사회 역시 그들의 기본제도가 구체적인 정치적 옳음과 정의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비자유적 국민이 만민사회를 위한 합당하고 정의로운 법을 존중하게 유도된다면, 자유적 만민은 그 사회를 관용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LP 99).

2) 적정 수준의 위계적 만민으로의 확장

롤스가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국내 정체를 5가지 형태로 구분하였을 때, 자유적 만민과 비자유적이지만 적정 수준의 협의 위계체계를 지닌 사회의 국민들인 적정 수준의 위계적 만민은 질서정연한 만민에 속한다. 적정 수준의 사회는 정치적으로 합당한 만민 사회의 선의의 구성원이며 이 점에서 관용되는 사회로 인정받게 된다.

적정 수준의 사회는 자유주의 사회와는 매우 다른 공적 정치 문화를 가진다. 예를 들어 적정 수준의 사회는 하나의 우세한 종교에 따라 기본 제도를 조직한다. 이 제도는 여성이나 종교적 소수자가 공직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선거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적정 수준의 사회의 정부는 정기적으로 모든 사회 집단의 대표들과 협의를 하거나 구성원들의 제기한 이견을 수용하고 이에 양심적으로 응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이민을 허가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의 안전, 재산에 대한 권리, 노예제로부터의 자유, 법 앞에서의 형식적 평등, 집단 학살적인 공격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모든 사람의 핵심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자유 사회의 시민들은 적정 수준의 사회가 정의롭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관용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적정 수준의 사회는 내적으로 질서정연하여 크나큰 악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Wenar, 2012: 670-671).

롤스는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들의 기준과 함께 카자니스탄(Kazakhstan)이라는 가상의 적정 수준의 위계적 이슬람 인민의 사례를 제시한다.

카자니스탄의 법체계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선호되는 종교는 이슬람이며, 그리고 단지 이슬람교도만이 정치 권력의 고위직을 차지할 수 있고, 외교문제를 포함한 정부의 주요한 결정과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을 허용하고, 이들은 종교의식을 공포나 시민권의 상실 없이 행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혹은 사법부의 고위 관직들을 차지할 권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배척은 카자니스탄과 자유적 민주 정체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된다. 자유민주정체에서는 모든 관직과 직위가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에

게 개방되어 있다.) 다른 종교와 협회들은 그들 자신의 문화적 삶을 번영시키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의 시민문화에 참여하도록 장려된다(LP 120-121).

카자니스탄과 같은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는 자유주의적 정치구조를 가지지 않으나, 그들의 사회 내의 정의가 심각히 훼손되지 않을 정도의 나름의 적정성을 갖췄다면, 자유주의 사회도 이들을 인정해야 한다. 적정성을 갖춘 사회는 자유주의적 정치질서를 완전하게 구축하진 못하나, 나름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회는 자유주의 사회와 평화 공존적 관계가 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자유적 사회들이 적정성을 갖춘 위계적 사회들에게 자유주의적 정치질서를 강요하는 것은 자유적 사회나 위계적 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롤스는 카자니스탄과 같은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는 우리가 현실적이고 일관성 있게 희망할 수 있는 사회이며, 이러한 사회는 종교적 소수파를 다루는 데 매우 계몽된 사회라고 생각하면서, 자유적 사회와 함께 비자유적 사회가 지지할 수 있는 합당하게 정의로운 만민법을 고안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한계에 대한 계몽으로 여긴다 (박정원, 2012: 316; LP 106-108, 124).

제 2 절 비이상적 이론

가장 심대한 형태의 부정의들이 정의로운 (또는 적어도 적정 수준의) 사회정책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또는 적어도 적정 수준의) 기본제도들의 확립을 통해 제거되면, 크나큰 죄악들은 궁극적으로 사라질 것이다(LP 24).

롤스는 이상적 이론에서 자유적 만민과 비자유적이나 위계적인 만민들이 고안한 만민법의 원칙들을 통해 부정의가 제거되고 크나큰 악들이 소멸되어 인류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는 이들과 같이 질서정연한 만민들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회정책과 기본

제도를 수용할 수 없는 사회들이 존재한다. 합당한 정치적 정의관은 질서정연한 만민들의 근본적 이익-영토의 수호, 안보와 안전의 확보, 자유로운 정치제도와 시민사회의 기본적 자유 및 자유로운 문화를 보전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보장하는데, 질서정연한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아닐 경우에는 근본적 이익이 보장될 수 없다(송경호, 2012: 158). 그러나 롤스에 따르면, 질서정연한 만민들은 세상의 모든 만민이 만민법의 이상을 수용하고 따르는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점진적인 단계의 방안을 비이상론에서 제시한다. 다시 말해, 롤스는 비이상론을 통해 이 세상에 상대적으로 질서정연한 만민이 일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들이 비질서정연한 만민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비이상론은 효과적이면서도 도덕적이고, 정치적으로 달성 가능한 정책들과 행위경로를 제시하고 어떻게 합당한 만민법의 준수를 거부하는 무법국가(outlaw states)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burdened societies)들이 만민법을 수용하고 준수하게 되는 세계로 이행하게 되는지를 다룬다.

비이상적 이론은 두 종류로 구성된다. 첫째는 합당한 만민법을 준수하기를 거부하는 특정한 정체들의 조건을 다루는 불순응의 조건들(conditions of noncompliance)을 다루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불리한 여건들(unfavorable conditions)로 인해 자유적 혹은 적정 수준의 질서정연한 정체에 이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회들-불리한 여건으로 고통 받는 사회-에 대해 다룬다.

1. 무법국가와 정의 전쟁의 원칙

1) 만민법에서 인권의 역할과 무법국가들 내의 인권

롤스는 만민법에서 인권을 “특별한 종류의 긴급한 권리”로 명시한다. 노예와 농노신분으로부터의 자유, 양심의 자유(그러나 평등한 자유는 아니

다), 집단학살과 인종청소로부터 인종집단의 보호 등이 긴급한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권은 입헌적 기본권이나 자유민주적 시민권과는 구분되며, 특정 정치제도에 속하는 여타의 권리들과도 구분된다.

인권은 합당한 만민법 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인권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한하고, 한 국가의 국내적 자율성의 한계를 설정한다. 롤스에 따르면, 전쟁은 자국방어 혹은 인권보호를 위한 개입의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각 국가의 정치사회적 제도들은 인권을 기준으로 적정성이 판단되므로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에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롤스는 인권을 통해 합당하게 정의로운 만민 사회의 성원이 될 수 있는 사회들의 국내법은 만민들의 사회에서도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인권의 준수 여부는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의 판단 기준이 된다(LP 124-127; 손철성, 2011: 265-266; 정원섭, 2012: 183-185).

4번째 원칙과 같은 것-불간섭의 원칙-은 무법국가 및 심대한 인권위반의 일반적 경우에는 명백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원칙은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의 경우에는 적합하긴 하지만, 전쟁과 심각한 인권위반 행위들이 만연하는 무질서한 국민들의 사회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LP 67).

인권은 만민법에서 본질적이며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권의 정치적 힘은 무법국가를 포함한 모든 만민과 사회들에 적용되고 구속력을 지닌다. 따라서 질서정연한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아닐지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는 비난을 받고, 중대한 경우 강제적 제재와 내정 간섭을 받을 수 있다.

롤스는 합당한 만민법에 의해 주권을 재구성하여 전통적인 전쟁권과 무제한적인 국내적 자율성을 국가에 부여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권은 국가 주권의 변화 문제와 연결되며, 주권에 대한 적합한 재정의와 한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국가와 구별되는 만민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만민들의 정치체제의 합당하게 정의로운 성격 혹은 적정성의 강조를 통해 전쟁권과 국내적 자율성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 무법국가의 경

우, 권력이나 영토, 경제적 부를 획득하려는 팽창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전쟁을 일으키며, 인간으로서 가지는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조차 존중하지 않는다. 자국민의 최소한의 인권, 기본적 이익조차 존중하지 않고, 주변국에 대한 침략으로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법국가의 경우,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고, 강제적 제재와 간섭을 받을 수 있다(장동진, 2001: 324-325, 328-329; 송경호, 2012: 158-159; LP 53-54).

무법국가들은 공격적이고 위협하다. 따라서 이런 국가들이 자신들의 방식을 변화하거나 혹은 변화하도록 강제된다면, 모든 국가들은 보다 안전하고 좀더 안정적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힘과 폭력의 국제적 분위기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LP 128).

롤스는 인권을 위반하는 무법국가 역시 궁극적으로 질서정연한 만민 사회의 성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질서정연한 만민들이 무법국가에 장기간의 점진적인 압력을 가하거나 경제 및 다른 형태의 지원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 혹은 무법국가를 상호 이익을 가져오는 협력적 관행의 선의의 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통해 무법국가를 제어하거나, 무법국가의 팽창주의적 정책이 질서정연한 정체의 제도와 안보를 위협하고 전쟁을 도발할 경우, 질서정연한 만민이 방어적 차원의 무력 사용을 통해 무법국가에 대응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들은 무법국가가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 결국에는 협력적 만민으로서 만민 사회의 평화와 안정성을 추구하게 만든다(장동진, 2001: 328-329; 송경호, 2012: 159; LP 81).

2) 정의전쟁 원칙: 전쟁의 권리

(1) 질서정연한 만민의 전쟁 권리

어떤 국가도 그 국가의 합당한 이익에 반대되는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하

기 위한 전쟁의 권리는 없다. 그렇지만 만민법은 모든 질서정연한 만민(자유적 만민과 적정 수준의 만민 모두)뿐만 아니라 정말로 합당하게 정의로운 만민법을 준수하고 존중하는 사회에도 자기방어를 위한 전쟁의 권리를 부여한다(LP 142).

만민법의 5번째 원칙, 원초적 평등의 원칙(initial principle of equality)-만민은 자기방어의 권리(the right of self-defense)를 갖는다. 그러나 자기방어 이외의 이유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는 없다-은 질서정연한 만민에게 자기방어를 위한 전쟁의 권리를 부여하나 전통적인 주권국가 자신들의 합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합리적 방법으로서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거부한다. 질서정연한 만민은 상호 간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들은 단지 무법국가의 팽창주의적 정책에 의해 자신들의 안전과 안위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합당하게 믿을 경우에만 전쟁을 수행한다(LP 142-143).

자유적 만민이 자기방어를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자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수호하고 입헌민주정치제도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적정 수준의 만민 역시 자기방어를 위한 전쟁권을 가지는데, 자유적 만민과는 다르게 자신들이 방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술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역시 수호할만한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카자니스탄의 통치자들은 적정 수준의 이슬람 사회를 올바르게 지킬 수 있다. 국제 사회의 5번째 종류의 사회인 자애적 절대주의 체제 역시 자기방어를 위한 전쟁의 권리를 가진다. 자애적 절대주의 체제는 인권을 존중하나 구성원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질서정연한 사회로 볼 수는 없다. 비공격적이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는 어떠한 사회라도 자기방어를 위한 전쟁의 권리를 가진다.

(2) 정의전쟁의 원칙: 전쟁의 행위

롤스는 자신의 전쟁수행법이 왈쩌(Michael Walzer)의 『Just and Unjust

War』를 따르고 있으며 중요한 점에서도 이 책의 입장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롤스에 따르면, 정의로운 전쟁을 통한 방위는 가장 우선시되고 긴급한 과제일 뿐이다. 정의전쟁의 장기적인 목적은 모든 사회들이 만민법을 존중하고 질서정연한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어, 모든 지역에서 인권이 보호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에 근거하여 전쟁행위를 제한하는 원칙들-전쟁수행법(Jus in bello)의 원칙 6가지를 설정할 수 있다(LP 147-150).

(i) 정의롭고 질서정연한 국가가 수행하는 정의전쟁의 목적은 만민간의 정당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만민의 현존하는 적과의 관계에서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ii) 질서정연한 만민은 상호 간에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질서정연한 정체들의 안보와 자유로운 제도들을 위협하는 팽창주의적 목적들을 가진 비질서정연한 국가들에 맞서는 경우에는 전쟁을 할 수 있다.

(iii) 전쟁행위에 있어서 질서정연한 만민은 무법국가의 지도자들과 관료들, 그 국가의 군인들, 그리고 그 국가의 민간이란 세 종류의 집단을 신중하게 구분해야 한다. 전쟁은 지도자들과 관료들이 일으키며, 전쟁에 대한 책임은 이들에게 있으며 민간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iv) 질서정연한 만민은 가능한 한 전쟁을 수행하는 적대국의 구성원 즉 민간인들 및 군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만민법에 따라 권리를 가지며, 이들에게 인권의 내용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v) 질서정연한 만민은 실행 가능할 때 자신들의 행위와 선언을 통해 전쟁 기간 동안 자신들이 지향하는 평화의 종류와 자신들이 추구하는 관계의 종류를 예시해야 한다.

(vi) 실제적인 수단-목적 추론은 항상 어떤 조치와 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제한된 역할을 해야 한다. 전쟁행위의 규범들은 어겨서는 안 되는 특정한 한계선을 설정하므로 전쟁계획과 전략, 교전행위는 최고의 비상상황(situation of supreme emergency)의 경우를

제외¹⁰⁾하고는 한계선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고통 받는 사회와 원조의 의무

1) 불리한 여건들(unfavorable conditions)

고통 받는 사회들은 팽창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은 반면에,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전통들 즉 인적자본과 기술수준, 종종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물질적 및 과학기술적 자원들을 결핍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질서정연한 사회들의 장기목표는 무법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 받는 사회들을 질서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다(LP 162-163).

롤스는 비이상적 이론의 첫 부분, 불순응 이론에서 무법국가에 대한 질서정연한 사회들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 때 무법국가에 대한 제재의 근거는 ‘인권’으로서 만민법 내에서 인권의 특별한 역할에 대해 상기시켰다. 비이상적 이론의 두 번째 부분에서 역시 롤스는 인권의 관점에서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들에 대한 원조의 의무를 주장한다(김남준, 2018: 334). 롤스에 따르면, 만민이 고통 받는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원조의 의무를 지니나, 의무 이행의 근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정의의 원칙이 아니다. 그는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은 다양하고,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원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분배정의 원칙은 명확한 목적과 차단점(cut-off point)¹¹⁾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롤

10) 최고 비상상황으로 인한 면제(supreme emergency exemption)란 특수 상황에서 시민이 직접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엄격한 민간인의 지위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1941년과 1942년에 이루어진 영국의 독일 폭력은 독일의 승전을 용인할 수 없기에 정당화될 수 있었다. 모든 질서정연한 사회들의 최고의 비상상황에 대한 면제에 대한 호소는 나치즘의 도덕적·정치적 악행으로 인한 입헌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 최고 비상상황에서의 면제의 적용은 특수 상황에 달려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때로 달라질 수 있다(LP 152-154).

스가 생각하는 원조란 분배정의 원칙에 따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열악한 천연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의 종교적 및 도덕적 신념들과 문화가 그 기반이 되는 해당 사회의 정치적 전통, 법, 재산과 계급구조가 자유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질서정연해질 수 있다(LP 163).

롤스가 주장하는 원조의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질서정연한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목표(target)를 달성하면, 원조의 대상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하더라도 질서정연한 사회의 성원이 되었기에 더 이상의 원조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2) 원조의 의무(duty of assistance)에 대한 세 가지 지침

첫 번째 지침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질서정연한 사회가 부유한 사회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제시하였던 “정의로운 저축(just saving)”에 대한 세 가지 기본 요점을 통해 첫 번째 지침에 대해 논의한다. 정의로운 저축 원칙의 목적은 자유로운 입헌민주사회의 구현을 위한 정의로운 기본제도의 확립과 시민들의 보람 있는 삶을 위한 사회체계의 확립이다. 따라서 저축은 정의로운 (혹은 적정한) 기본제도들이 확립될 경우 중지될 수 있다. 정의로운 제도의 확립을 위해 막대한 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어느 정도의 부의 수준이 요구되는지는 그 사회의 정의관과 사회의 고유한 역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질서정연한 만민 사이의 부의 수준은 동일하지 않다.

『정의론』의 정의로운 저축의 특징들과 『만민법』의 원조 의무 모두

11) 원조의 대상이 되는 사회가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고, 질서정연한 만민 사회의 성원이 될 경우, 원조를 중단한다.

정의로운 제도의 실현을 추구하나, 부의 평균수준 혹은 특정 계층이나 사회의 부의 수준을 높이려 하지 않는다.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고통 받는 사회의 정치문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고통 받는 사회가 정치 및 사회적 문화를 변경하도록 질서정연한 만민이 도움을 주는 데에는 특별히 쉬운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롤스는 한 국가의 정치문화, 구성원의 근면함과 협력적인 재능들, 정치 및 사회 제도들의 기본구조를 지지하는 종교, 철학, 도덕적 전통에 따라 국가의 부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히 재원의 분배만으로 기본적인 정치 및 사회적 부정의를 교정할 수 없고, 인권에 대한 강조를 통해 고통 받는 사회의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무능함과 국민 복지에 대한 무감각을 깨닫고 교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 번째 지침은 원조의 목표(target)을 규정하는 것으로,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에 대한 질서정연한 만민의 원조는 고통 받는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어 결국에는 그들이 질서정연한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다. 롤스에 따르면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되는 것은 정치 및 사회 제도의 결함에 있지만, 원조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결함이 없는 제도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 사회에 합류할 의지가 있는 고통 받는 사회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하고 만민 사회와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는 인권의 초국가적인 힘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송경호, 2012: 160-161; 장동진, 2001: 330; 김남준, 2018: 335-336; 백미연, 2014: 188).

제 4 장 『만민법』에 대한 비판

제 1 절 만민 개념의 부적절성 대한 비판

롤스의 『만민법』을 비판하는 주장들에 따르면, 롤스의 『만민법』에는 교육권이나 평등한 고용 기회와 같은 권리와 같이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권리로 여겨지는 기본적 인권들이 권리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롤스는 이와 같이 중요한 권리들을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박탈하는 매우 불평등한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배신(betrayal of liberalism)’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예를 들면, 롤스는 구성원들의 기본적 자유를 부정하고 선에 대한 하나의 포괄적인 가치에 호소하는 제도를 가진 위계적 사회에 도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데, 롤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를 매우 불의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롤스 『만민법』의 핵심적 가정, 즉 만민을 만민법의 합의 당사자,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자로 설정한 것으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만민법에서 개인이 아닌 만민을 합의의 당사자로 설정할 경우, 사실상 국제법의 근본 원리가 선이나 정의에 대한 공적이고 지배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반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비판적이거나 반체제적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이익은 완전히 묵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이러한 원칙은 사회 내에서의 노예적 복종이나 차별과 같은 조건들을 묵인하거나 인종 차별이나 소수 민족에 대한 정치적 배제 등을 허용함으로써 불평등한 질서를 영속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Buchanan, 2000: 698; Caney, 2002: 101-102; Freeman, 2006: 31; Follesdall, 1997: 2). 이러한 문제점은 롤스가 『만민법』을 통해 국내 사회의 정의로운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을 도모하게 하는 외교 정책을 구안해내려고 했던 목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만민 개념의 부적절성은 국가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만민의 개념을 사용한 것에서 비롯된다. 롤스가 국가 대신 만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유는 국가 주권의 무제한적 성격에 따른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롤스는 각 국가가 개전(開戰)의 권리를 가졌다고 여겼던 전통적인 주권의 개념을 거부하면서, 전쟁은 오직 자기 방어의 차원에서만 가능하며, 각 국가 주권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에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인권 수호라는 최소 조건을 근거로 국가의 대내적 자율성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전쟁에 대한 권리를 축소시켜 전통적인 주권국가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 만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롤스의 생각과 달리 2차 세계 대전 이후 이미 주권국가의 권력은 제한되어 오고 있다. 현행 국제법 역시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쟁은 금지하고 있으며, 타국의 침략에 대한 방어권만을 인정한다. 또한 한 국가의 자율성은 인권에 의해 제한된다(Buchanan, 2000: 698-670; 최기성, 2009: 62). 따라서 국가라는 용어를 거부하고 만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Buchanan, 2000: 670).

이와 더불어 만민의 관점만을 반영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으로 불충분한 또 다른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들은 많은 경우에 자신들이 태어난 사회 내에서만 평생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국경의 범위를 넘어서 개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특정 사회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의 권리가 반영된 만민법, 개인으로서의 원칙이 국제법의 원칙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Buchanan, 2000: 698).

제 2 절 해외 원조 의무의 범위에 대한 비판과 전 지구적 정의 실현을 위한 대안적 이론

1. 베이츠와 포기의 지구적 평등주의

롤스에 따르면,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및 사회 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여건 하에 살고 있는 다른 만민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LP 67)”는 만민법의 8번째 원칙은 질서정연한 만민들이 불리한 사회적 여건에 의해 고통 받는 사회에 대하여 원조의 의무를 가진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 때 원조는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여 결과적으로 질서정연한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즉, 고통 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만민 사회의 성원이 된다면, 이들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해도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 다시 말해 원조의 의무는 모든 사회들이 정의로운 자유적 혹은 적정 수준의 기본제도를 가질 때까지만 유효하고, 이 목표를 넘어설 경우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롤스가 보기에 한 사회의 최종적인 정치적 목적은 올바른 이유로 완전하게 정의롭고 안정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목적을 이루면 만민법은 이러한 제도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목표, 즉 생활수준의 향상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런 연유로 롤스는 정의로운 제도들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을 요구하는 사회의 요청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사회들 간의 물질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려는 요청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한다(LP 181).

그러나 롤스가 주장하는 해외 원조는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롤스는 국내 및 국제 사회의 불평등의 감소 및 완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국제 사회에서 원조는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거나 선진국과 저개발국가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직 ‘정치적 차원’에 한정된다.

해외 원조에 대한 『만민법』의 주장은 『정의론』에서 제시했던 국내 사회의 평등주의적 원칙을 국제 사회로 확대·적용하여 지구적 차원에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이들의 기대에서 빛나갔고, 이에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따르면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내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롤스는 이미 국제 사회를 자유주의적 국민들의 사회의 확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구적 차원에서

의 원초적 입장을 실행해야 한다(Tan, 2001: 15-16; 김준석, 2010: 20; 장동진, 장휘, 2003: 216; 박성우, 2016: 11; 백미연, 2014: 187). 롤스는 『만민법』에서 국내 사회의 정의의 원칙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거부하며 국제적 차원에서의 분배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지구적 평등주의자들은 정의의 원칙, 특히 차등의 원칙을 국제 사회에 적용하여 지구적 차원의 분배 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베이츠와 포기가 있다.

이들의 관점은 평등한 대우(equal treatment)에 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인종, 민족, 계급, 성별 등의 요인에 의해 차별 받는 것이 부당하듯이, 국적이란 자의적 요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것 역시 부정의하며(백미연, 2014: 192), 특정 국가의 경제적 후진성이나 빈곤은 그 국가의 내재적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서에 의해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 질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박성우, 2016: 12) 국제 사회의 불평등은 지구적 차원의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현재의 논쟁은 명백히 세계적인 분배 정의에 대한 어떤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의 이론에서 존 롤스가 준 정당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Beitz, 1979: 8).

베이츠는 롤스처럼 국내 사회와 국제 사회를 구분하지만, 롤스가 자신의 정의론을 세계 사회로 확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세계 경제가 하나의 질서로 수렴되어 가는 모습을 띠기 때문에 국내의 정의 원칙을 국제 사회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자연자원의 배분과 국적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자의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빈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고통 받아서는 안되지만(백미연, 2014: 193), 베이츠가 보기에 롤스의 해외 원조는 단순히 빈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불평등한 처지에 놓이는 무고한 희생자를 허용하고 있다(김남준, 2018: 347). 베이츠는 풍부한 자원을 가진 국가는 이를 잘 활용하여 번영하게 되나, 그러한 행운을 가지지 못한 국가의

구성원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자원의 부족 때문에 결국엔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권리로 인정되었으나, 자원의 임의적 분포에 따른 자원의 배타적인 사용과 그에 따른 국제 사회의 불평등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하며 교정될 필요가 있다(박성우, 2016: 27; 김준석, 2010: 19). 그러나 롤스가 주장하는 원조의 의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우연한 요인에 의한 불평등을 교정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향상시켜주지 못한다. 따라서 베이트스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국적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구적 차원의 분배 원칙에 동의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적이란 임의적인 요인을 무지의 베일의 뒤에 놓고 지구적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최초의 상황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베이트스가 자원 분포의 임의적 요인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은 자원의 평등한 재분배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국가 간의 불평등 문제는 단지 개별 국가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으며, 자원의 임의적 분포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있다면, 이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구적 차원의 재분배가 필요하다(Beitz, 1979: 141; 박성우, 2016: 29에서 재인용).

한편, 롤스의 경우, 국제 사회에서의 행위의 주체를 개인이 아닌 만민으로 설정한다. 이에 해외 원조의 문제 역시 국가 간의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이해되며, 국제 사회의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 역시 국내 사회를 대표하는 만민, 즉 자국민의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가진 시민이다. 이들은 국가 간의 부의 차이를 조정하여 개인들의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원칙을 구안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시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혹은 적정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원칙을 도출하는데 집중한다. 그러므로 롤스에게 원조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여건을 지닌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돕는 것에 제한된

다. 그러나 베이트스는 국제 사회의 행위의 주체를 개인으로 설정한다면 롤스의 관심사가 전환될 것이라고 말한다. 베이트스의 주장처럼 국제 사회의 행위의 주체, 즉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를 개인으로 설정할 경우, 이들은 국가 간의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원조 역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즉 지구적 수준의 최소수혜자들의 처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Beitz, 2000: 692-693; 김남준, 2018: 348; 백미연: 193-194).

포기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제 질서의 확대와 이로 인한 국제 사회의 상호의존성의 증가는 부정의한 국제 사회의 질서와 구조를 형성하였고 그에 따른 선진국의 풍요와 세계빈곤의 문제로 지구적 최소수혜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어야만 한다(김남준, 2018: 349; 박성우, 2016: 12; 백미연, 2014: 12). 그는 선진국이 세계 경제 질서에 따른 풍요의 산물을 누리면서도 저개발국가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진국이 국제 질서를 이용하여 저개발국의 빈곤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진국은 세계 빈곤 퇴치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박성우, 2016: 12).

나는 가난한 나라들의 극심한 가난과 억압의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소극적 의무를 부과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략)… 즉, 세계 빈곤층은 그들이 그러한 위치에 놓일 만 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Pogge, 2002: 144).

부정적인 강압적인 제도를 실행하는 데 협력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는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개혁을 촉진할 의무를 촉발시킨다(Pogge, 2002: 172).

포기는 빈곤 퇴치의 의무를 ‘소극적 의무’로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면서 강한 법칙성을 띠는 의무로 적극적 의무를 떠올린다. 그러나 칸트적 의미에서 적극적 의무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려

주지 못하며, 사회적·법적 제재를 통해 강제할 수 없고, 특정 권리의 청구인을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의무에 속한다. 적극적 의무의 대표적인 예로 자선(benevolence)을 들 수 있다. 자선의 대상과 내용은 전적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달려 있고, 자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덕적 혹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소극적 의무는 의무의 내용과 대상을 명시하고, 의무를 불이행 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의무로, 완전한 의무에 해당하며, 무엇을 하지 말라와 같은 금지의 형태를 띤다. 포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원조는 불완전한 적극적 의무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원조의 내용과 대상은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에 해당되며, 원조를 받는 국가가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에게 원조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기는 원조의 의무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원조의 대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으로부터 확보하여 찾아 원조의 의무의 구속력을 마련하고, 선진국에게 무조건적인 원조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선진국의 의도가 어떠한지 그들은 세계 경제 질서의 일방적인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세계 빈곤을 야기한, 도덕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가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원조를 통해 빈곤을 퇴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선진국은 세계 경제 질서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협상력을 가지기에 국제 사회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또한 국제적 협상 과정은 선진국에 특혜를 주며, 가난한 국가의 경우에는 엘리트와 독재자만 이익을 본다. 따라서 가난한 국가의 최소수혜자들의 이익은 전혀 보장되지 못한다. 이렇듯 세계적인 빈곤과 기아,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의 문제는 선진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된 국제 사회의 질서에 의한 것이기에 이들은 보상적 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엄중한 책임을 지닌다(김준석, 2010: 12-13; 박성우, 2016: 12-13; 김남준, 2018: 349-350).

포기 역시, 베이츠와 유사하게 지구적 정의의 관점에서 원조의 의무를 논한다. 세계 사회의 최소수혜자가 불운에 의해 고통 받지 않도록 개인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처지가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포기는 소극적 의무를 통해 한 사회 및 세계 사회의 정치사회적 구조의

개혁을 추구하기보단, 한 개인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칙을 통한 물질적 재분배와 제도의 개선을 지향한다.

2. 센의 비교적 정의관과 지구적 정의

센(Amartya Sen)의 논의는 롤스의 『정의론』에서 출발한다. 센은 베이츠와 포기와는 달리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주장을 비판하지 않고,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전 지구적 정의의 실현에 대해 논의한다. 따라서 센의 논의는 롤스의 해외 원조의 주장에 대한 비판과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전 지구적 정의에 대한 대안적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센은 롤스의 주장이 정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에 미친 영향을 인정하나, 롤스의 한계를 지적한다.

먼저 센은 롤스의 제도 중심적 정의론을 비판한다.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회 협동에 의한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제도를 확보하기 위한 원칙이나, 센은 ‘이러한 제도 중심적인 정의론이 세계화 시대의 전 지구적 정의관으로도 유효한가’(목광수, 2018: 172)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한다.

한편, 롤스는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국내 사회의 정의관을 제시하고 『만민법』에서는 지구적 차원의 정의관을 제시한다. 롤스는 국내 사회와 국제 사회에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이 다르며, 자신이 『정의론』에서 제시한 정의의 원칙을 국제 사회로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센은 국내적 정의와 지구적 정의에 대한 롤스적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세계화 속에서 한 사회의 일은 단지 국내적 사건으로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센의 입장은 세계화에 따른 윤리적 문제와 연관된다. 세계화 시대의 윤리적 문제는 복잡하게 얽힌 세계 사회의 관계와 다양한 행위 주체들 간의 연관성에 의하여 특정 국가의 문제로만 한정 지을 수 없다(목광수, 2018: 174-175).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마신 커피가 아

프리카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생산한 원두를 사용했다면, 이 커피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 다양한 행위주체들과 관련된 전 지구적 차원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센은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현실 사회의 부정의를 제거할 수 있는 현실성과 실천성을 지니지 못하는 초월적인(transcendental) 정의관으로 질서정연한 사회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센에 따르면, 제도 중심적인 롤스의 정의관은 정의로운 제도가 마련될 경우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거나 정의로운 제도가 먼저 마련된 후 이와 별개로 개인에 대한 이론적 원칙이 구안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공동체적 여건이 마련된 국내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경우, 국제 사회를 아우르는 기본 구조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단지 적정성(decency)을 통해 만민법의 원칙을 확장할 뿐이지 공통의 문화나 전통을 지니면서 상호성에 입각한 원칙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하다(목광수, 2011: 153; 목광수, 2018: 176-179).

센은 롤스의 정의관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세계화의 특성에 맞게 보다 현실적이면서 실현가능한 전 지구적 정의관으로서 비교적 정의관(comparative perspective of justice)을 제시한다. 센의 비교적 정의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롤스의 제도 중심적이고 이상론적인 정의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먼저 센은 정의의 선결 조건으로서의 제도의 확립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정의를 제거하는 행위자를 상정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정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 주체성(agency)를 가지며 자신의 행위 주체성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공적 추론(public reasoning)을 통해 부정의를 시정해 나갈 수 있다. 행위 주체성은 반성적 추론 능력과 자기 의식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각 개인은 자신의 행위 주체성으로 부정의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행위 주체성에 입각한 직관적 판단이 왜곡되어 부정의에 대한 판단이 개인마다 달라진다. 이 때, 각 개인의 직관적 판단이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는 공적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부정의를 인식하고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확립을 통해 부정의를 제거하고자 한 롤스의 발상

은 비제도적 측면에서의 부정의 문제에서는 매우 취약하다. 셴에 따르면 이 같은 롤스의 정의론의 한계는 각 개인들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다양성에 주목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평등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 불평등과 부정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일한 재화의 공급을 통해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두 사람이 가진 능력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이들이 동일하게 분배받은 동일한 재화는 실제로 평등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에 셴은 개인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 개인이 가진 역량(capacity)에 따른 재화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목광수, 2018: 181-186). 역량이란 각 개인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실질적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유성상, 이은혜, 2016: 122-124). 각 개인은 개인적인 차이나 환경적 영향 등으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지니며 이들이 가지는 역량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저마다 다른 개인들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즉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역량 접근법(capacity approach)에 근거한 비교적 정의관은 롤스의 제도 중심적 정의관이 놓친 제도 외적인 부분, 문화적 환경, 사회적 인식 등과 같은 비제도적인 부분에서 발생한 부정으로 인해 개인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셴의 비교적 정의관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행위 주체들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여 지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적 이론으로 가치를 가진다.

제 3 절 국가주의와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

나의 기본적 생각은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제시한 선도적 발상과 평화적 연합이란 개념을 따르고 있다. 나는 이 발상을, 우리가 한 사회에 적용되는 입헌민주정체의 자유주의적 정치관이란 사회계약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두 번째 단계의 제2의 원초적 입장을 도입하여 자유적 국민의 대표들이 여타의 자유적 국민들과 합의를 하는 단계로 확장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중략)… 이 모든 것은 입헌적 정체가 그 시민들의 자유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만민법을 확립해야만 한다는 칸트의 생각과 일치한다(LP 29).

나는 『영구평화론』에 나타난 칸트의 선구적 생각에 따르는데, 세계정부-나는 세계정부랑 중앙정부가 통상 행사하는 법적 권한을 지닌 통치된 정치체제란 뜻으로 언급한다-가 세계적인 전제정치체제가 되거나, 아니면 다양한 지역 및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자유와 자율성을 쟁취하려고 함에 따라 발생하는 빈번한 투쟁으로 인해 분열된 취약한 제국을 통치하는 정도의 정치체제로 생각한다(LP 65).

롤스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바탕으로 국내 사회의 정치적 정의관을 국제 사회로 확장한 만민법의 아이디어를 구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롤스가 온전히 『영구평화론』의 발상을 수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칸트는 개인 및 국가의 사회적 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시민법, 국제법, 세계 시민법으로 구분한다. 시민법은 시민사회에 적용되는 법으로,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성격을 규정한다.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으로, 시민사회의 질서와 구성원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법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들은 연맹을 결성하여 국제 사회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한다. 세계 시민법은 국가와 이방인, 국가와 그 국가에 속하지 않은 다른 시민과의 관계를 다루는 법으로, 칸트는 평화적인 이방인은 우호적인 대우를 받을 환대(hospitality)라는 보편적 권리의 개념을 활용하여 국제 사회를 세계 시민사회로 확장한다(손철성, 2018, 292-293).

그러나 롤스의 만민법은 칸트의 국제법과 유사하다. 롤스는 만민법을 통해 국제 사회의 다양한 국가들 간의 외교 정책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을 뿐이다. 이 때 만민법은 각 국내 사회의 대표들, 즉 만민 사회의 구성원들의 대표들로, 이들의 합의의 목적은 자국민의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질서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국제 사회의 원칙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민법』에서 세계 시민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롤스의 『만민법』은 기본적으로 국가, 만민 사회로부터 출발한다. 전통적인 주권국가의 개념은 거부하지만, 국가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롤스는 국가 주권의 자율성에 한계적 기준을 설정하고, 만민 사회의 기초로 합당성에 근거한 상호성을 제시하지만, 이는 타국에 대한 전쟁을 개시하는 행위, 종교적 억압과 개종을 강요하는 행위들을 제한하는 데에만 국한될 뿐이다. 이러한 주장은 주권국가의 자의성을 제한하려는 모습을 떠나, 주권국가의 틀 속에서 자의성을 제어하려는 모순을 가진다(손철성, 2018: 294-296; 최기성, 2009: 67-68; 장동진, 장휘: 2003: 216-217). 롤스의 관심은 정의로운 입헌 민주적 자유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전쟁이나 종교적 억압으로 인한 갈등과 충돌은 자유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자유적이고 완전히 정의롭지 않더라도 적정 수준의 위계적 협의체계를 가진 사회를 관용하고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국제 사회의 질서와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자유사회 및 자유적인 국제 질서에 실질적 혹은 잠재적 위협요인이 되는 무법국가와 고통 받는 사회 역시 전쟁이나 원조의 방법을 통해 결국에는 질서정연한 만민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는 곧 자유사회의 질서 속에서 국제 관계를 재편하고 이를 통해 자유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세계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롤스는 정치적 부정의에서 비롯된 압제, 빈곤, 종교적 박해, 인종 말살 등과 같은 크나큰 죄악들은 정의사회가 구현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 같은 기본적인 믿음에서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국내 사회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발상, 자유주

의적 정치적 정의관을 국제 사회의 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롤스가 입헌민주국가 내의 정의를 실현하여 공정한 협력 체계로서의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하고 가능하게 하는 국제적 환경과 질서 즉, 입헌 민주국가들의 합의와 관용을 통해 국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롤스가 생각하기에 현실주의적 유토피아로서 만민법은 자유주의적 정치관의 확대를 희망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롤스는 이상주의의 관점으로 세계 시민사회와 세계 평화를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현실주의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국제관을 바탕으로, 서구 자유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세계 평화로서 바라보는 한계를 지닌다.

제 5 장 『만민법』의 도덕교육적 적용 방안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이 강조되고 이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 유엔(United Nation, UN)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의 우선 과제로 세계 시민성(global citizenship) 함양을 제시하였다. 같은 해 유엔 총회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세부 목표로서 세계 시민 교육을 포함하였다. 또한 2015년에 개최된 유네스코(UNESCO) 세계 교육 포럼(World Education Forum)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을 글로벌 교육의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전 세계의 공동 목표로 공표하였다(이혜원 외, 2019: 2; 차승한, 2018: 161; 박환보, 조혜승, 2016: 200; 김진희, 2015: 61). 이 같은 추세에서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졌고, 학교 현장에서도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전반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세계 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실제로 일선 교육청에서 세계 시민 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기도 하며, 각 교과에서도 세계 시민성과 관련된 내용 요소를 교육과정에 삽입하거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는 세계화에 따른 전 지구적 변화 속에서 세계 시민성에 대한 학교 및 교육계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교육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

현행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역시 도덕적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구 공동체의 평화를 실현하는 세계 시민의 육성을 목표로 하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세계 사회의 윤리적 문제와 해결에 관한 쟁점과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주제에서 롤스 『만민법』의 논의는 세계 사회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세계 시민성, 지구촌 윤리, 세계 평화를 강조하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증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교과서에서 인권, 환

경,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 및 세계 시민성과 관련된 내용이 강조·증가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최근 전 세계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교과서 종단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 간 교과서의 내용이 서로 유사해지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69개 국가의 교과서에서 인권 논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메이어(John W. Meyer) 외(2010)의 연구에 의하면, 교과서 속에서 인권에 관한 논의는 1995년 이후부터 확연하게 많아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역사교과보다는 시민교과나 사회교과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Wong, 1991). 교과서에서 인권에 관한 논의가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관한 논의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국제 사회에서 강조하는 세계주의(cosmopolitanism)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되어 인권 및 환경 보호, 다양성, 세계 시민성 함양 등을 강조하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Bromley, 2009; Ramirez, Bromley & Russell, 2009; Meyer, Bromley, & Ramirez, 2010; Moon & Koo, 2011; Wong, 1991).

김형렬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의 교과서의 내용 서술이 환경, 인권, 정의 등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유사해지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중·고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에서 세계 시민성과 관련된 키워드(인권, 정의, 평화, 다문화·다양성, 세계 시민, 환경, 민주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행 2015 개정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도덕과의 ‘총괄 목표’ 중 하나로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개인이 시민 사회와 국가, 지구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를 특히 삶의 의미 물음과 연관지어 찾아볼 수 있는 능력과 실천 성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면서 학생들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구 공동체를 인식하고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량과 실천 성향을 함양할 것을 추구한다.

이러한 목표를 고려하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두 과목 모두에 세계 시민성 및 세계 시민 윤리와 관련된 주제가 내용 요소로 설정되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 사회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롤스의 『만민법』은 국제 정의 및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세계 시민 윤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원에 삽입되었다.

제 1 절 『만민법』의 세계 시민 교육적 함의

1. 세계 시민 교육 분류에 따른 『만민법』의 특징

세계 시민성 함양에 대한 교육적 요구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 및 범교과 활동을 통해 세계 시민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만민법』의 논의 역시 이러한 추세 속에서 도덕과 교육과정 속에 삽입되었다. 그러나 현재 세계 시민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해석들이 사용된다. 현재 사용되는 세계 시민 교육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세계화에 따른 변화와 그에 대한 교육적 처치에 관한 논의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평화교육, 유럽의 시민 교육, 개발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과의 관련성 속에서 의미를 파악되고 있다(이혜원 외 2019: 2; 박환보, 조혜승, 2016: 202-203).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학문적 합의의 부재로 인해 세계 시민 교육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학자들마다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이해를 저해한다. 본 연구 역시 『만민법』의 논의가 도덕교과의 세계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아, 세계 시민 교육의 다양한 개념 정의를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작업들 중 이혜원 외(2019)의 연구에서 기존의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접근법을 분류한 것을 참조하여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혜원 외(2019)에 따르면, 안드레오티(Andreotti)는 부드러운(soft) 접근법과 비판적(critical) 접근법으로 세

계 시민 교육을 분류한다. 부드러운(soft) 접근법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업적주의에 기초한 접근법으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교육 목표로 삼으나, 비판적(critical) 접근법은 탈식민주의의 관점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 교육의 목표에 내재한 서구적 편견(Western bias)과 국가주의를 비판하고, 국제 사회의 권력과 불평등, 차이 등의 개념을 인지할 수 있는 학습자의 비판적 문해력(critical literacy) 함양을 추구한다. 딜(Dill)의 경우 역량 접근법과 의식 접근법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분류하는데, 역량 접근법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의 연마를 도모하고, 의식 접근법은 동감과 문화적 감수성, 인도주의적 가치와 같은 글로벌 성향(global orientation)의 내면화를 추구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숄츠(Sultz)는 신자유주의적(neoliberal) 접근법과 급진적(radical) 접근법, 변혁적(transformationalist) 접근법을 제시하는데 신자유주의적 접근법은 안드레오티의 부드러운 접근법과 유사하고, 급진적·변혁적 접근법은 안드레오티의 비판적 접근법과 유사하다. 옥슬리와 모리스(Oxley & Morris)는 세계 시민주의적(cosmopolitan) 접근법과 옹호적(advocacy) 접근법으로 분류하고 각 접근법을 다시 각각 4가지로 분류하여 범주화한다. 먼저 세계 시민주의적 접근법은 국가와 개인들 사이의 관계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정치적 접근법과 인권과 공감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덕적 접근법, 노동력 및 자본의 이주와 국제 개발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경제적 접근법과 문화적 상징의 전 세계적인 수렴과 전파에 주목하는 문화적 접근법으로 분류한다. 옹호적 접근법은 글로벌 시민 사회의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사회적 접근법과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불평등한 권력 구조와 경제적 억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비판적 접근법,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환경적 접근법과 종교와 같은 영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들 간의 상호 공존에 관심을 가지는 영적 접근법으로 구체화된다.

국내 학자들에 의해서도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분류와 범주화가 이루어진바 있다. 정봉근과 박인영(Chung & Park, 2016)에 따르면 세계 시민 교육은 역량 중심 접근법과 도덕적 접근법, 비판적 접근법으로 분류된다. 역량 중심 접근법과 도덕적 접근법은 안드레오티의 부드러운 접근법과, 비판

적 접근법은 안드레오티의 비판적 접근법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조대훈(2016)은 여행자적 접근법, 국가주의적 접근법, 인도주의적 접근법, 비판적·변혁적 접근법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분류하는데, 여행자적 접근법은 다른 사회와 국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하는 태도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국가주의적 접근법은 글로벌 사회에 한 지식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를 추구한다. 인도주의적 접근법은 타인 및 타집단을 배려하고 인류 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이타적·박애적 시민의 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비판적·변혁적 접근법은 자국 및 타국의 문화와 사회 체제 내의 권력관계와 불평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것으로 강조한다(이혜원 외, 2019: 7-8).

이처럼 여러 학자들이 세계 시민 교육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특성에 따라 세계 시민 교육의 접근법을 범주화한 바 있는데,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이 국제무대에서 갖는 정치·경제·문화적 영향력을 인정하고 이러한 질서 속에서 전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의 수호를 강조하는 관점이다. 둘째,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국제 질서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관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안드레오티(Vanessa Andreotti, 2014)가 세계 시민 교육을 부드러운 관점(sof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과 비판적 관점(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으로 분류한 것에 대응된다.

[표1]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과 비판적 세계 시민 교육(soft versus critical citizenship education)

구분 기준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 (sof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비판적 세계 시민 교육 (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문제	빈곤, 무력함	불평등, 부정의
문제의 특성	개발, 교육, 자원, 역량, 문화, 기술의 부재	복잡한 구조와 체계, 착취를 유지시키는 힘의 관계와 태도

특권적 지위의 정당화	개발, 역사, 교육, 근면, 더 나은 조직, 더 나은 자원의 사용, 기술	부정의하고 폭력적인 체계와 구조로부터의 이익
배려의 근거	보편적인 인류애, 나눔과 배려, 타인에 대한 책임감	정의, 위해의 복잡성, 타인에 대한 책임감, 책무성
행동의 바탕	인도주의적, 도덕적	정치적, 윤리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	우리는 동등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원하고, 같은 것을 할 수 있음	불평등한 세계화, 불평등한 힘의 관계, 북반구와 남반구의 엘리트들 나뉠의 보편성에 대한 가정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	개발에 장애물이 되는 구조, 제도, 개인	구조, (신념)체계, 제도, 가정, 문화, 개인, 관계
목적 (무엇을 위하여)	모두가 개발과 조화, 관용, 평등을 성취하는 것	부정의가 이야기되고, 대화를 위한 보다 평등한 장이 마련되며, 모든 사람이 자신 고유의 개발을 정의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것
평범한 개인들의 역할	몇몇 개인은 문제이나, 대부분의 개인은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압력을 가하는 문제 해결자	모든 사람이 문제이면서 동시에 해결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캠페인 지지, 시간과 전문성 및 자원 기부	자신의 위치 맥락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구조, 가정, 정체성 태도와 힘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참여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외부에서 내부로	내부에서 외부로
변화의 기본원칙	보편성	성찰, 대화, 윤리적 관계
세계시민 교육의 목표	선한 삶과 이상적인 세상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이 되는 것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의 유산과 과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역량을 키우는 것
세계시민 교육의 전략	세계적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캠페인 촉진	세계적 이슈, 관점, 차이에 대한 윤리적 관계에 대한 관여를 증진하고, 복잡성과 힘의 관계를 언급

세계시민 교육의 잠재적인 혜택	어떤 문제에 대한 더 큰 이해, 캠페인 지원, 무언가를 할 동기 등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보다 잘 알고 책임 있으며,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잠재적인 문제	스스로에 대한 중요성, 독선 문화 우월주의, 식민주의 관계 및 특권 강화, 부분적인 소외, 무비판적인 행동	죄책감, 내부적 분쟁, 마비, 미참여, 무기력한 느낌

안드레오티에 따르면,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은 서구 사회의 중심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기제로 작동하여 서구 중심적인 세계 질서와 불평등한 세계 구조에 대한 비판을 불가능하게 하고 또 다른 제국주의 질서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판적 문해력 교육을 통해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구조 및 현상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안드레오티는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면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녀는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 역시 어떠한 맥락에서는 적절하다고 보면서, 단지 세계 시민 교육이 부드러운 관점에만 머무를 것만이 아니라 비판적인 관점 역시 견지하여 세계 시민 교육이 보편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가치를 가르치면서도 세계 사회의 구성원들이 세계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Andreotti, 2014: 49-50).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 교과에서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 역시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의 이해와 실천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의 현상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변혁하기 위한 실천 역시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만민법』의 논의는 안드레오티가 말한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의 관점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롤스는 『만민법』에서 서구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국제 정의를 구현할 것을 강조한다.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로 『만민법』에서의 롤스의 주장은 세계 시민 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만민법』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부재할 경우, 즉 『만민법』에 대한 이해가 롤스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만민법』을 활용한 세계 시민성

함양은 비판적 문해력을 함양하는 데는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국제 질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롤스의 주장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세계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함께 만민법의 논의를 둘러싼 논쟁, 특히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목표는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들이 정의로운 제도를 구안할 수 있게 돕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구적 빈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지구적 평등주의자들의 주장과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각 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초월적인 원칙이라는 쉐의 비판을 함께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유사회 간의 합의와 관용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평화를 추구하는 『만민법』의 국제주의적 성격이 국가 중심적인 국제관을 근거로 서구 자유사회의 유지와 존속으로서의 세계 평화를 설정한다는 비판도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만민법』의 한계, 즉 자유주의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국제 사회의 안정성의 구현만을 강조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비판적 문해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종합적 이해를 통해 비판적 문해력을 갖추어야 한다.

『만민법』의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국제 사회 내 개별 국가들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만민법을 도출하기 위해 만민을 합의의 주체로 설정한다. 둘째, 만민법은 자유주의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합의로 구성된다. 셋째, 자유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구안한 외교 정책의 원칙인 만민법은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까지 적용된다. 자유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은 적정 수준의 사회가 입헌 민주사회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관용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넷째, 롤스는 인권을 한 국가의 자율성에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여기고, 인권의 준수 여부를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삼는다. 다섯째, 무법국가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는 정의로운 전쟁과 정치적 원조를 통해 정의롭고 질서정연한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한다. 여섯째, 만민법의 준수를 통해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각

국가들이 정의로운 또는 최소한 적정 수준의 기본제도와 사회정책을 확립하여 국제 사회의 조화와 안정성 및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

롤스는 “자유적 및 적정 수준의 만민들 모두에 의해 정의로운 또는 적어도 적정 수준의 기본적 제도들이 확립된 현실주의적 유토피아(LP 191)”로서의 세계 사회를 희망했다. 롤스의 『만민법』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확장으로,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로서의 입헌 민주국가가 정치적 정의관을 통해 공정한 협력 체계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로서의 국제 사회 역시 만민법을 통해 평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롤스에게 각각의 국가들은 그들이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한, 그리고 국제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국제 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실질적 혹은 잠재적 위협을 가질 경우, 전쟁이나 원조를 통해 위협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고유성을 인정받는다.

물론 롤스의 『만민법』이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에 온전히 포함된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민법은 외교 정책의 기틀을 제시한 것이지, 특정한 교육 목표나 전략을 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민법』의 기저에 있는 롤스의 기본적 입장, 특히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과 서구 자유 사회 중심적 관점으로부터 롤스의 논의가 전개된다는 점은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의 기본 가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만민법』이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의 특징과 유사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롤스와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이 세계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유사성에서 찾을 수 있다.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이 세계 사회 내 문제의 특성과 특권적 지위를 정당화하는 근거, 국제 관계 속에서의 배려의 근거와 행동의 바탕으로 설정한 것들 모두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의 강조와 함께 세계에 대한 서구 사회의 선도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에서 빈곤과 무력함이라는 국제 사회의 문제는 개발, 교육, 자원, 역량, 문화, 기술의 부재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롤스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로 규정한 원조의 대상국들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다.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전통들 즉 인적 자본과 기술수준, 물질적 및

과학기술적 자원들의 결핍(LP 162)”으로 인해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국가들은 원조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태로 이들을 방치할 경우,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이들의 불안정성은 세계 사회의 평화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 때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는 자유적이거나 비자유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로서, 이들은 이미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지닌 만민 사회로,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나은 조직을 갖추고 더 나은 자원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에서 특권적 지위를 가진다. 롤스는 원조의 근거를 기본적 인권이라는 도덕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에 둔다. 질서정연한 만민 사회, 자유주의 사회와 자유사회는 아니지만 나름의 질서를 가져 입헌 민주사회로부터 관용되는 적정수준의 사회들은 국제 사회 내 다른 국가들이 인권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그들의 대내적 자율성을 인정하고 만민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롤스의 주장은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에서 행동의 바탕을 인도주의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설정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만민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통의 동정심을 가지고 결속하기 때문에 만민들은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에서 강조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과 인류애를 가진 세계 사회 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 국제 사회에서 인권의 지위와 역할, 국제 사회의 일원들이 가지는 공통의 동정심이라는 인류애와 책임감은 무법국가에 대한 정의 전쟁에서도 드러난다. 무법국가의 정치가들은 자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익 추구의 관점에서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정책을 통해 전쟁을 일으켜 세계 사회의 안정을 위협한다. 따라서 무법국가는 고통 받는 사회와 성격은 다르지만, 인권을 근거로 이들은 정의로운 전쟁의 대상이 되며, 결국에는 세계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 만민 사회의 성원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이는 정의 전쟁 역시 인권이라는 인도주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만민 사회가 지닌 인류애와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에서는 세계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저개발 국가들의 개발에 걸림이 되는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롤스 역

시 원조를 정의로운 만민 사회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로 하여금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고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게끔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만민법』의 목적은 국제 사회 내 모든 국가가 자유사회, 적어도 적정 수준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이 저개발 국가의 개발을 강조하고 인류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관용과 평등을 강조하면서, 보편성을 세계 사회의 변화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 『만민법』의 목적과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의 목적을 설정한 주체들은 『만민법』의 경우 자유사회,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 역시 서구 자유주의 사회이다. 롤스와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 모두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각 국가들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이해하는 것을 중시하지만,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과 롤스 모두 자유주의 관점에서 구조의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는 비서구권 국가들이 서구적 질서로의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롤스와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의 목적(목표)은 세계 사회 내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세력이 설정한 것으로 그들의 질서로의 편입, 그들의 관점에서의 개발과 조화, 관용과 평등의 성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해보면, 롤스의 만민 사회와 비만민 사회의 특징과 그들 간의 관계와 부드러운 세계 시민사회의 서구국가와 비서구국가의 특징과 그들 간의 관계가 대응되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이분법적 구분이 이론적으로 엄밀하지 않고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롤스의 주장과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 간의 유사성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만민법』에서 질서정연한 만민 사회가 비질서정연한 국가들(고통 받는 사회와 무법국가)을 원조하거나 정의로운 전쟁을 통해 이들로 하여금 자유주의적인 질서정연한 만민 사회(적어도 자유주의 사회가 관용하는 적정 수준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을 추구한다 점, 이것의 근거로 인권이라는 인도주의적 가치가 제시된다는 점은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에서 서구 사회가 인류애와 책임감과 같은 보편적이고 인도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 개발이나 역량, 기술 등의 결핍으로 인해 빈곤과 무력함에 빠진 비서구권 국가들도 개발, 조화,

관용, 평등의 성취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롤스와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 간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만민법』에서 롤스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외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준거로 여기고 다양한 국가들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이 주는 시사점이 크지만, 정치적 원조의 차원에서 해외 원조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만민법』을 현실주의적 유토피아로 설정하는 것은 결국 자유주의 사회의 이상의 실현하고 현존하는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할 뿐이라는 비판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만민법』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안드레오티가 부드러운 세계 시민 교육의 적절성을 인정하면서도 서구 사회 중심의 국제 질서와 함께 국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권력 구조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할 것을 강조하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세계 시민성 함양을 『만민법』 활용 방향 제언

롤스는 『만민법』을 통해 자유주의 신념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여 국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 때 ‘인권’ 개념은 롤스의 국제 정의론의 근거로, 보편적이고 인도주의적 가치의 실현을 중시하는 롤스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세계 시민성에는 인권, 정의,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와 함께 비판적 문해력도 포함된다. 즉 세계 시민은 지구촌 및 인류에 대한 도덕적 태도와 함께 세계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함께 견지하여 국제 정의와 세계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만민법』은 인류에 대한 도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나 세계 사회의 변혁을 위한 실천을 담고 있지는 않다. 롤스는 『만민법』을 통해 현존하는 국제 질서의 유지와 국제 사회의 안정성을 구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도덕 교과에서 세계 시민성의 함양을 위한 교육 자료로서 『만민법』을 활용할 경우, 롤스의 논의를 소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보편적 가치

를 중시하는 태도를 갖추게 하는데 활용되게 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 문해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교과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롤스의 논의만을 소개할 경우, 『만민법』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자료로서만 활용되어 온전한 의미에서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자료로서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만민법』을 교과 자료로 활용할 경우, 롤스의 주장과 함께 『만민법』과의 논쟁, 특히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와 지구적 평등주의자들과의 논쟁과 쉐의 대안적 정의관에 대한 탐구,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종합적 탐구를 통해 비판적 문해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비판적 문해력이란 학습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통해 사회 현상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부정의한 구조를 발견하고 이를 변혁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역량을 말한다. 비판적 문해력은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 교육 방법으로부터 그 특징을 알 수 있다. 비판적 문해 교육은 학습자를 교수활동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변혁해 낼 수 있는 주체로 보고 자신의 삶에 대해 비판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변화를 실천하게 할 것을 목표로 한다(배영주, 2016: 3). 비판적 문해에서 문해란 단순히 문자를 읽고 텍스트가 담고 있는 지식을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텍스트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으로, 문해의 주체는 세계와 끊임없이 관계맺음으로서 자신의 문해력을 개인적인 도구 이상으로 세계를 변혁하는 실천적인 매개체로서 활용해야 한다(송훈섭, 2003: 50). 따라서 세계 시민 교육의 비판적 문해력 역시, 첫째, 세계 사회의 일원인 세계 시민을 세계 사회의 변화의 주체로 설정하고, 둘째, 세계 사회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세계 사회의 현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민이 아니라 세계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셋째, 비판적인 관점에서 세계 사회를 바라보아 세계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내는 주체로서의 세계 시민을 양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

고등학교 도덕 교과에서 『만민법』은 『만민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과 함께 다루어져 학생들이 온전한 의미에서의 세계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록 교육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먼저 롤스의 신념을 이해하고 『만민법』을 통해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이와 함께 『만민법』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롤스의 주장에 담긴 문제와 세계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세계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성찰을 통해 세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혁을 실천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본 연구는 도덕 교과에서 세계 시민성의 함양을 위한 교육 자료로서 『만민법』을 활용할 때, 세계 시민으로서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주체적인 태도로 세계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변혁을 도모하는 태도를 함께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활용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만민법』의 구체적 활용 방안으로 교과서 탐구 활동 예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 연구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 탐구 활동 예시 자료를 제시한다. 『만민법』에서 롤스가 핵심 가치로 여기는 인권 개념을 근거로 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입과 관용과 관련된 예시 및 인권 친화적인 세계 시민성의 함양과 관련된 예시 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구성하고 다른 학생들과 토의 및 토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보완하고 공고화해 나가는 과정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만민법』과 관련된 논쟁, 특히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와 노직, 싱어의 논쟁과 함께 지구적 평등주의자들 간의 논쟁을 제시하여 해외 원조와 관련된 롤스의 주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예시 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만민법』의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 간의 논쟁을 통해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세계 시민이 지녀야 할 윤리적 태도와 역량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예시 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논쟁을 활용하는 것은 논쟁 주제에 대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세워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만민법』 역시 롤스의 주장과 대립되는 논쟁 역시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만민법』과 관련된 논쟁의 활용은 『만민법』에 대한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세계 사회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만들어 나가게 하며, 주체적인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세계 사회의 변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태도를 기르는 데 이바지 할 것이다.

제 2 절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만민법』 활용의 실제

현행 2015 개정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두 과목 모두에 세계 시민성 및 세계 시민 윤리와 관련된 주제가 내용 요소로 설정되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 사회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문제해결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롤스의 『만민법』은 국제 정의 및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세계 시민 윤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원에 삽입되었다.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 모두 『만민법』의 내용은 해외 원조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지고 있다. 해외 원조는 빈곤과 같은 세계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여 인류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국제 정의와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표2] ‘생활과 윤리’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만민법』 삽입 단위)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내용 체계	사회 사상	성실 배려 정의 책임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해 지구적 차원의 가치 규범과 시민윤리에 기초한 범세계적 노력이 요구된다.	6. 평화: 세계 시민과 세계 평화는 실현 가능한가? ① 동·서양의 다양한 평화사상 ② 세계 시민주의와 세계 시민 윤리의 구상	○도덕적 공동체 의식 •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성찰하기 •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정당화하기 • 도덕적 사회 건설방안 제시하기
성취 기준	[12윤사04-06] 동·서양의 평화사상들을 탐구하여 세계 시민주의와 세계 시민 윤리의 원칙 및 지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세계 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표3] ‘윤리와 사상’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만민법』 삽입 단위)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내용 체계	평화와 공존의 윤리	성실 배려 정의 책임	지구촌 시대의 국제 정의는 국제 분쟁, 반인도적 범죄, 국가 간 빈부 격차, 절대 빈곤 문제 등이 해결될 때 실현될 수 있으며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원조 등의 윤리적 책임과 기여가 필요하다.	3. 지구촌 평화의 윤리 : 지구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에는 무엇이 있을까? ① 국제 분쟁의 해결과 평화 ②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도덕적 공동체 의식 •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기 •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기 • 윤리적 실천방안 제시하기

성 취 기 준	[12생윤06-03] 국제 사회의 여러 분쟁들과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에 따라 만민법의 내용이 교과서에 삽입하여 교과서를 집필할 때, 생활과 윤리의 경우 국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이론과 함께 톨스의 주장을 이론을 탐구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집필하고, 윤리와 사상 역시 생활과 윤리와 유사하게 지구적 협력과 해외 원조의 이론적 근거로 세계 시민주의와 함께 국제주의를 제시한다.

[표4] 생활과 윤리 쟁점별 집필기준: 세계 시민 윤리

- 동서양의 주요 평화사상들에 대한 도덕적 탐구를 토대로 지구촌의 평화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노력들에 관해 토론해 볼 수 있도록 기술한다.
- 지구적 협력과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들(국제주의, 세계 시민주의 등)을 비교해 보고, 세계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해 탐구해 볼 수 있도록 집필한다.

[표5] 윤리와 사상 내용 영역별 집필기준: 사회사상 영역의 세계 시민주의

- 최근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분쟁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 원인들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도록 기술한다.
-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공정하게 기술하고,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쟁점들을 사례들을 활용하여 윤리적 관점에서 숙고하고 평가해 볼 수 있도록 집필한다.
- 국제 사회에서 윤리의 필요성과 이론적 근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간 빈부격차의 문제, 빈곤과 해외 원조의 문제 등을 여러 이론을 바탕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
- <윤리와 사상>의 내용 요소 ‘평화’ : 세계 시민과 세계 평화는 실현 가능한가?’와 중복되지 않도록 집필한다.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주장뿐만 아니라 『만민법』이 보다 다각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주장은 만민법의 내용 중 비이상론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 시민성의 함양에 대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여 롤스의 『만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민법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 및 만민법을 통해 롤스가 이야기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해외 원조를 비롯한 만민법의 원칙을 꿰뚫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은 무엇인지 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세계 시민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세계 시민으로서의 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롤스의 인권 개념을 활용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서 탐구 활동 예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도덕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이 같은 가치를 세계 사회의 문제에 직접 적용하여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 인류의 공존공영을 도모하는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세계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비판적 문해력 함양을 돕기 위하여 해외 원조와 관련된 논쟁과 국제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논쟁에 관한 교과서 탐구 활동 예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만민법』의 논의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롤스 이론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가능하며, 이는 세계 사회를 입체적인 관점에서 살피고 세계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세계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만민법』의 인권 개념과 『만민법』과 관련된 논쟁을 활용한 자료는 학생들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덕적 세계 시민으로서의 태도와 역량을 갖추게 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은 비판적 문해력을 가지고 세계 사회의 변혁에 이바지하는 주체적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 역시 함양하게 될 것이다.

1. 『만민법』의 인권 개념 활용

『만민법』은 이상론과 비이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롤스는 국제 사회 내 존재하는 각 국가들을 5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이 중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로서의 자유사회의 정치적 정의관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적용하여 각 국가들의 고유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국제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로운 세계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롤스는 이상론을 통해 먼저 국제 사회 내 정의로운 자유사회의 대표들이 자유사회들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정의 원칙 8가지를 구안한다. 이 때 도출된 8가지 원칙은 현재의 국제 질서와 각각의 사회들을 인정한다. 즉 현재 국제 관계 속에서 모든 사회가 정의로운 자유사회가 아니며, 무법국가와 고통 받는 사회와 같은 비이상적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다. 그러나 동시에 8가지 원칙 중 인권 존중의 원칙이 제시되는데, 인권은 만민법에서 매우 특별한 역할을 담당한다. 롤스가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각 국가의 고유성을 인정하지만, 모든 국가가 만민의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다. 롤스에 따르면, 만민 사회의 구성원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따라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형성한 자유사회와 비자유주의적이나 적정수준의 협의의 위계체계를 갖추면서 동시에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들만이 질서정연한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 때, 비자유주의적이나 적정수준의 사회는 만민법을 만들어낸 당사자가 아니다. 만민법은 자유사회의 대표들 간의 합의를 통해 도출되는데, 비자유적이나 적정수준의 협의적 위계체계를 갖춘 국가에까지 확장되고 적용되며, 이들은 만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지닌다. 적정수준의 사회의 경우, 자유주의적 정치구조를 가지지 않으나, 이들의 사회 구조가 정의를 훼손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고유한 정치체제를 인정받는다. 최소한의 인권의 준수 여부는 자유적 사회가 비자유적 사회를 수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적정수준의 사회는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켜 자유사회의 관용의 대상이 되며, 만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가진다.

비이상론에서 고통 받는 사회를 원조하고, 무법국가와 전쟁하는 것 역시 인권을 근거로 수행된다. 고통 받는 사회의 경우 정의로운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무법국가의 경우 권력이나 부, 영토를 획득하려는 팽창주의적 정책으로 구성원들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인권은 만민법에서 본질적이며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인권의 정치적 힘은 만민 사회뿐만 아니라 비만민 사회에까지 적용되고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질서정연한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아닐 경우에도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는 비난을 받고,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강제적 제재와 내정 간섭까지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롤스는 국제 관계를 규정하는 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할 때, 인권을 가장 중요하면서 근본적인 가치로 보아 모든 국가가 꼭 지켜야 할 가치로 설정하였다. 롤스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을 국제 관계로 확장하여 각 국가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국제주의적인 관점을 취하지만, 이 같은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인권을 제시한다. 국가의 고유성은 인권의 준수 여부를 통해 관용될 수도, 관용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롤스는 각 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만민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준거로서 보편적이면서 도덕적인 가치인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관용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가치이자 덕목이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은 세계 사회를 도덕적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롤스는 인권을 만민법에서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원조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국가들의 고유성에 대한 관용의 근거가 된다. 롤스에게 원조는 도덕적 의무이다. 그 의무의 근거는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 결과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도출된다. 정의 전쟁 역시 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관심보다는 영토 확장이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와 전쟁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권이 정당화 근거가 된다. 롤스에게 인권은 세계 사회의 평화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인권의 준수 여부는 국제 관계 속에서 각 국가가 행위 주체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권을 핵심 가치로 삼아 자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는 자유주의 사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체의 고유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된다.

국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서 제시되는 해외 원조, 정의 전쟁과 정치 및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에 대해 세계 시민 및 세계 사회가 지녀야 할 관용에 대한 강조는 인권에 대한 강조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개인이 시민 사회와 국가, 지구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를 특히 삶의 의미 물음과 연관지어 찾아볼 수 있는 능력과 실천 성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에 부합하도록 롤스 인권 개념을 활용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과 교과서 예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표6] 집필 기준 예시: 만민법의 인권 개념을 활용한 관용

교과목	영역	내용요소	하위내용요소	집필 기준(예시)
생활과 윤리	평화와 공존의 윤리	세계 시민 윤리	국제 정의와 해외 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을 근거로 특정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집필한다.
윤리와 사상	사회 사상		지구적 협력과 세계 시민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 빈부 격차 및 빈곤의 원인과 해결책을 인도적 입장에서 비교하여 기술하고 인권을 근거로 해외 원조의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집필한다.

집필 기준 예시를 바탕으로 만민법의 인권 개념을 활용하는 교과서 탐구 활동 예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롤스의 인권 개념을 근거로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용과 개입과 관련된 예시 자료와 인권 친화적인 세계 시민성의 함양과 관련된 예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자 한다. 이러한 자료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표7] 교과서 탐구 활동 예시: 국제 사회의 개입에 대한 논쟁

(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0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6일 VOA에 따르면 유엔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는 북한 인권에 관한 안보리 회의 개최 여부 질문에 '회의가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10일 열린다'고 확인했다.

북한 인권 논의는 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안보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나왔던 2014년 12월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후 2017년까지 4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은 작년에도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회의는 소집에 필요한 9개 이사국 동의를 얻지 못하며 무산됐다. 그동안 북한은 안보리가 자국 내 인권을 논의할 때마다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번에도 서한을 통해 안보리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안보리에 보낸 서한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일을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대사는 인권과 관련한 회의는 모두 "미국의 적대적 정책을 묵인하고 편드는 행위"라며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나 핵 문제 해결을 돕기보다 오히려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에 대한 회의 개최를 강행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악화로 돌아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뉴스1(2019.12.06.), 유엔 EU대표부 "안보리, 10일 北인권 논의"...2년 만에 재개(<http://news1.kr/articles/?3786789>) (검색일: 2019.12.09.)-

(나) 토마스 오헤아 퀴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 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퀴타나 보고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합의와 한반도 평화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 등이 전했다.

퀴타나 보고관은 자신은 북한과의 교류를 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노력도 지지한다고 말했다. 퀴타나 보고관은 이밖에 북한이 계속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6개월간 중국이 탈북자를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면서 “이들을 강제복송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퀴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인구의 약 40%인 1천100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 등 식량 불안정 상태에 있다면서 북한 식량난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뉴스핌(2019,10.24.), 유엔 北인권 보고관 “핵협상에 인권문제 포함돼야.. 식량난은 정권 책임” (검색일: 2019.12.09.)-

활동 1.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활동 2. 여러분이 국제기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한다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만들 것인가요?

활동 3. 핵 문제가 먼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려면 인권에 대한 논의는 차 후에 해야 한다 vs 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개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신은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세요.

활동 4. 정의 전쟁에 아퀴나스와 왈짜, 롤스의 입장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정당인지 혹은 정당하지 않은지를 밝히고, 근거를 제시하세요.

활동 5. 현재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찾아보고, 롤스의 인권 개념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활동 6. 관용이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쓰세요.

[표8] 교과서 탐구 활동 예시: 인권 친화적인 세계 시민성 함양하기

오늘날 세계화는 전 세계에 걸쳐 도전 받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며, 그런 불만은 정당하다. 세계화는 선(善)을 위한 힘일 수 있다.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관한 견해의 세계화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세계 차원의 정치적 운동은 부채 탕감과 지뢰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이어졌다. 세계화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또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더 높은 생활수준을 획득하도록 도와주었다. 경제의 세계화는 새로운 수출 시장을 모색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세계화를 이용한 국가들에게 이익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이익을 본 나라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지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기조절적 시장이라는 개념에 의존하기보다는 개발에 있어 정부가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인식한 나라들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계화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일자리가 파괴되고 생활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범위 바깥에 있는 세력에 맞서 갈수록 무력해지는 자신의 존재를 느꼈다. 그들은 그들의 민주주의가 훼손당하고 그들의 문화가 침식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세계화와 그 불만』, p.419-420-

활동 1. 위 글을 근거로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서술하세요.

활동 2. 위 글과 관련하여 세계화를 통해 인권이 향상된 경우와 인권이 침해된 경우를 찾아보세요(뉴스, 소설, 영화 등을 활용하기).

4컷 그림으로 소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사례 소개하기

인권 향상		인권 침해	
사례(사건)에 대한 설명		사례(사건)에 대한 설명	
<p>활동 3. 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혹은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p> <hr/> <hr/> <hr/>			
<p>활동 4. 세계 시민에 속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세계 시민이 지녀야 할 윤리적 태도 5가지를 설정해봅시다.</p> <hr/> <hr/> <hr/>			

[표9] 교과서 탐구 활동 예시: 인권을 근거로 세계 사회 문제 이해하기

(가) 신자유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화는 경제적 비효율성과 정치적 억압의 근원이었던 국가주의를 해체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시장 경제 질서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가능케 한 기본 동력인 정보 통신 혁명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중앙 정부와 대기업에 의해 독점되어 왔던 정보들을 누릴 수 있게 하여 빈부 격차와 함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도 줄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정보와 판단에 기초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외국자본과 기업을 유치하며,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박찬구, 『생활 속의 응용윤리』, p.130-

(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기아는 인류에게 끈덕진 동반자였지.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의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눈부시게 향상되어 오늘날에는 19세기 같은 물질적인 결핍이 사라지게 되었지. 하지만 벌써 사라졌어야 할 기아 문제는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중략)… 식량 자체는 풍부하게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확보할 경제적 수단이 없어. 그런 식으로 식량이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매년 수백만의 인구가 굶어 죽고 있는거야. …(중략)… 배고픔은 세계의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식량이 제대로 분배된다면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고도 남게 될거야. …(중략)… 혹시 전 세계에서 수확되는 옥수수의 4분의 1을 부유한 나라의 소들이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선진국에서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거나 해서 영양 과잉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거꾸로 다른 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고 있어. …(중략)… 또 다른 문제는 세계 시장에 비축된 식량의 가격이 종종 인위적으로 부풀려진다는 데 있어.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농산품 가격이 투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미국의 시카고 곡물 거래소는 세계의 주요 농산물이 거래되는 곳이야. 이곳은 몇몇 금융 자본가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어. 사실 거래는 몇 안 되는 거물급 곡물상의 손에서 결정돼. 그들은 몇 사람 안 되지만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그들의 상업함대가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전 세계 곡물의 매매가를 결정하고 있단다.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p.36-41/72-74-

활동 1. (가)의 관점에서 (나)와 같이 세계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 논하세요.

활동 2. (나)의 관점에서 (가)와 같이 세계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 논하세요.

활동 3. 여러분은 (가)와 (나) 중에 어떤 입장을 더 지지하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활동 4. (가)와 (나) 각각의 입장에서 인권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나요? 각각의 관점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원칙과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예시를 써 보세요.

활동 5. (가), (나) 각각은 해외 원조에 대한 노직, 롤스, 싱어의 주장은 (가), (나) 중의 어떤 관점과 유사한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세요.

활동 6. 해외 원조에 대한 노직, 롤스, 싱어의 관점을 인권을 근거로 정당화하세요.

2.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와 세계 시민주의와의 논쟁 활용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주장에 대한 세계 시민주의자들의 비판을 함께 소개하는 것은 학생들로 해외 원조의 문제를 단순 암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흥미롭게 여기며 실천적인 문제로 바라보게 만들 것이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따르면 논쟁적이고 대립적인 주제는 논쟁적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박성춘, 2016: 144). 따라서 롤스 『만민법』의 내용을 교과 내용에 삽입했거나 삽입할 경우, 롤스의 주장과 대립되는 논쟁 역시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이 이를 평가하고 자신의 관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논쟁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 사회에 단편적인 이해를 넘어, 자신을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여겨 자신이 속한 지구 공동체의 미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태도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찾아나가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를 세계 사회의 문제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방관자로 여기지 않고 세계 사회를 변혁해 나가는 주체적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것이다.

현행 교과서에서 만민법은 해외 원조에 대한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해외 원조에 대한 다른 사상가들의 주장과의 비교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와 싱어, 노직의 주장을 비교하여 제시하는데, 이때 비교의 준거는 해외 원조를 의무로 볼 것인지, 자선으로 볼 것인지로, 롤스와 싱어의 경우 해외 원조는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이고, 노직의 경우 원조는 자선 행위와 같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라고 서술하면서 해외 원조를 둘러싼 논쟁을 제시한다.

[표10] 2015 개정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만민법』 관련 단위)

출판사	단원명	페이지
미래엔	지구촌 평화의 윤리	204-215
천재교과서		206-215
비상교육		208-218
금성출판사		204-214
지학사		202-211

그렇다면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는 무엇일까? 먼저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가 인류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중략)… 또한 롤스는 해외 원조가 정의 실현을 위한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중략)… 반면 노직은 자선의 관점을 제시한다. 노직은 해외 원조를 윤리적 의무로 인식한 싱어와 롤스의 주장에 반대한다. …(중략)…(미래엔, 생활과 윤리: 209-210)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해외 원조는 빈곤국이 질서정연한 사회로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중략)…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정의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질서정연한 사회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윤리적 의무이며, …(중략)… 싱어에 따르면 해외 원조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인류 전체의 고통을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윤리적 의무이다. …(중략)… 노직은 해외 원조를 의무가 아닌 선의를 베푸는 자선의 개념으로 본다. …(중략)… (천재교과서, 생활과 윤리: 211)

해외 원조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첫째, 다른 국가나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가이다. 노직은 개인이 자선의 관점에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이를 의무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본다. …(중략)… 둘째, 해외 원조 의무가 있다면 그 수준이나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이다.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의 국민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략)… 싱어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해외 원조의 의무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중략)… (비상교육, 생활과 윤리: 214-215)

해외 원조는 의무의 영역인가, 자선의 영역인가? 해외 원조를 부유한 개

인이나 국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문제라고 보는 자선의 입장과, 윤리적 의무로 규정하는 입장이 있다.

노직 | …(중략)… 해외 원조의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이며, 원조의 문제는 의무가 아닌 자선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싱어 | 모든 사람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 윤리적 의무입니다. …(중략)…약소국에 대한 해외 원조는 의무이며,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분배가 필요합니다.

롤스 | 질서 정연한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를 돕는 것은 의무입니다. …(중략)…
(금성출판사, 생활과 윤리: 209-210)

약소국에 대한 원조의 윤리적 근거는 무엇일까? 먼저, 약소국에 대한 원조의 근거를 자선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중략)… 약소국에 대한 원조의 근거를 윤리적 의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이 관점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싱어와 롤스가 있다. …(중략)… (지학사, 생활과 윤리: 208)

교과서별로 서술 방식과 내용에 대한 다소 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든 교과서에서 해외 원조를 둘러싼 논쟁으로 원조에 대한 의무론적 관점과 자선의 관점을 대비하면서 롤스와 싱어, 노직을 비교하여 다루고 있다. 한편 미래엔과 천재교과서, 비상교육 교과서의 경우, 롤스가 주장했던 원조의 목표가 정치적 원조에 한정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나, 정치적 원조에 대한 롤스의 주장이 지구적 평등주의를 목표로 경제적 원조를 주장했던 사상가들과의 논쟁 속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채 원조의 입장에 대한 롤스의 주장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원조를 둘러싼 논쟁은 원조를 의무로 볼 것인지 자선 행위로 볼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 있다.

고통 받는 사회에 대한 원조는 도덕적 의무이지만,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주장에서 핵심적인 것은 의무적 원조보다는 원조의 범위 내지 목적의 문제이다.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지 못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가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만듦으로써 만민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조는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정치적 차원의 것이 되어야 한다. 롤스에 따르면, 가난한 나라이더라도 질서정연할 수 있으

며,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나라이더라도 고통 받는 사회일 수 있다. 원조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 정의로운 사회 구조와 관련된 것이다.

롤스는 국제 사회에서는 하나의 사회 구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을 국제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원조는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적 차원의 재분배를 통한 평등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롤스의 주장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시켜 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 받았으며, 특히 베이츠와 포기와 같이 지구적 재분배를 통한 평등을 추구하는 세계 시민주의자들과의 논쟁이 시작되었다. 싱어 역시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원조를 제시하는데, 베이츠와 포기의 주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현행 생활과 윤리 교과서 서술은 롤스와 싱어의 차이를 제시하지만 원조의 범위 문제에 관한 논쟁은 활발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같은 의무론적 입장이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롤스와 싱어의 주장을 서술하고 있다. 원조에 대한 의무의 입장과 자선의 입장을 가진 사상가들을 탐구하고 이들 주장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해외 원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해외 원조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주장이 의무론적 관점에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원조의 목적과 범위를 둘러싼 논쟁, 롤스와 지구적 평등주의자들 간의 논쟁을 제시해줌으로써 빈곤과 해외 원조에 대한 논쟁을 여러 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표11] 2015 개정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만민법』 관련 단원)

출판사	단원명	페이지
미래엔	세계 시민주의와 세계 시민 윤리의 구상	212-214
씨마스		213-216
천재교과서		209-210
교학사		218-220
비상교육		207-208

해외 원조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국제주의나 세계 시민주의의 입장에서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가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중략)… 이처럼 롤스와 싱어는 해외 원조의 목적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을 사회 제도와 구조의 개선에 두고 있지만 싱어는 원조의 목적을 전 지구인의 복지 향상에 두고 있다. 하지만 롤스와 싱어 모두 해외 원조를 도덕적 의무로 규정하고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미래엔, 윤리와 사상: 213-214).

쟁점 토론: 우리는 국제 사회의 국민인가, 지구촌의 세계 시민인가?

롤스의 국제주의 | 원조는 고통 받는 사회의 사람들이 국제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원조의 의무는 모든 사회가 자유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를 가질 때까지 유효하다.

싱어의 세계 시민주의 | 기아의 문제는 가난한 나라에 대한 무관심에 있다. 선진국 사람들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과 자신의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한 원조로서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해야 한다(씨마스, 윤리와 사상: 215)

롤스는 시민의 기본적 정치 권리가 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은 정치적 전통과 물질적 자원의 결핍으로 고통 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략)… 롤스에 따르면, 원조의 목적은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중략)… 싱어는 고통을 감소하고 쾌락을 증진해야 한다고 보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해외 원조를 의무라고 주장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는 국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중략)… 지구적으로 최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 향상에 관심을 기울인다(천재교과서, 윤리와 사상: 210).

롤스는 원조의 목적은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는 원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반면 싱어는 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교학사, 윤리와 사상: 220).

해외 원조를 도덕적 의무로 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이다. 롤스와 같은 국제주의자는 고통 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해외 원조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중략)… 반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세계 시민주의를 지향하는 싱어는 인류의 고통을 줄이고 복지를 향상하는 것이 해외 원조의 목적이라고 본다(비상교육, 윤리와 사상: 208).

윤리와 사상의 경우, 생활과 윤리와 마찬가지로 해외 원조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와의 비교 속에서 원조 의무에 대한 롤스와 싱어의 입장을 비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원조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한 차이가 비교적 잘 드러나게 서술하고 있다. 단순히 차이점을 기술하고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서 원조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차이에 따른 논쟁을 제시한다면 학생들이 보다 원조에 대한 각 사상가들의 주장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싱어뿐만 아니라 베이츠와 포기의 주장을 함께 서술하여 롤스와 세계 시민주의의 논쟁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원조에 대한 논쟁을 탐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12] 집필 기준 예시: 해외 원조와 관련된 논쟁

교과목	영역	내용요소	하위내용요소	집필 기준(예시)
생활과 윤리	평화와 공존의 윤리	세계 시민 윤리	국제 정의와 해외 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롤스, 노직, 싱어의 관점을 근거로 해외 원조에 대한 논쟁을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집필한다.
윤리와 사상	사회 사상		지구적 협력과 세계 시민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와 지구적 평등주의자(포기, 베이츠)의 논쟁을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집필한다.

해외 원조에 대한 집필 기준 예시를 바탕으로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주장과 이를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는 교과서 탐구활동 예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 노직, 싱어의 논쟁뿐만 아니라 원조의 목적 내지 범위에 대한 롤스와 지구적 평등주의자 간의 논쟁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해외 원조에 대한 논쟁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폭 넓은 관점에서 해외 원조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살핀 후 자신의 관점을 견지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표13] 교과서 탐구 활동 예시: 해외 원조에 대한 논쟁 탐구하기 ①

(가) 해외 원조는 식량 부족으로 인해 고통 받는 나라들을 돕고 세계적 차원의 기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부족한 자원이나 식량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합니다.

(나) 세계 빈곤의 문제는 식량의 부족보다는 소수의 탐욕에 의한 부의 집중 현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수의 탐욕과 부의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합니다.

활동 1. (가)와 (나)는 해외 원조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입장입니다. (가)와 (나) 각각이 해외 원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설명하세요.

활동 2. 세계 빈곤 및 해외 원조에 대한 (가)의 입장을 (나)의 입장에서 비판하세요.

활동 3. 세계 빈곤 및 해외 원조에 대한 (가)의 입장을 (나)의 입장에서 비판하세요.

활동 4. 세계 빈곤과 해외 원조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표14] 교과서 탐구 활동 예시: 해외 원조에 대한 논쟁 탐구하기 ②

(가)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및 사회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여건 하에 살고 있는 다른 만민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 이 때 원조는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여 결과적으로 질서정연한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즉 고통 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만민 사회의 성원이 된다면, 이들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해도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

(나) 모든 사람들이 인종, 민족, 계급, 성별 등의 요인에 의해 차별 받는 것이 부당하듯이, 국적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것 역시 부정적이다. 특정 국가의 경제적 후진성이나 빈곤은 그 국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서에 의해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 질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불평등은 지구적 차원의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활동 1. (가)는 해외 원조의 목적을 무엇으로 생각하나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원조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활동 2. (나)는 해외 원조의 목적을 무엇으로 생각하나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원조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활동 3. 인권을 근거로 해외 원조에 대한 (가)와 (나)의 주장을 평가하세요.

활동 4. (가)와 (나) 중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더 지지하나요? 그리고 이 이유는 무엇 인가요?

활동 5. 해외 원조가 이루어진 사례를 찾고, (가)와 (나)의 관점 중 어떤 관점과 유사하게 원조가 이루어졌는지 논하세요.

[표15] 교과서 탐구 활동 예시: 해외 원조에 대한 논쟁 탐구하기 ③

(가) 주변을 둘러봐.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어야 하고,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해. 그리고 난 후 여력이 된다면 다른 나라를 도와야 해.

(나) 나는 주변의 이웃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인류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_____ 때문이야.

활동 1. 롤스, 노직, 싱어의 입장에서 (나)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활동 2. 여러분은 롤스, 노직, 싱어의 입장 중 어떤 입장을 지지하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활동 3. 롤스와 세계 시민주의의 논쟁을 바탕으로 (나)를 완성하세요.

활동 4. 활동 2를 바탕으로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와 세계 시민주의의 논쟁에 대해 설명하세요.

3.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종합적 이해 활용

롤스의 『만민법』은 하나의 세계 사회를 상정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전 지구적 확장을 통해 국제 사회의 안정성과 평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나,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들을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로서 인정하고, 이들이 자유사회는 아니나 인권을 존중하고 나름의 적정수준의 협의적 위계 체계를 가질 경우 그들의 체제를 존중하고 관용할 것을 주장한다. 롤스가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근거로 『만민법』을 구상했다고 하지만, 만민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외교 정책의 원칙으로 이해된다. 롤스의 『만민법』은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출발한다. 전통적인 주권국가는 거부하지만, 국가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국가의 존속과 함께 타국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한 안정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세계 시민주의는 국가보다는 세계, 하나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인류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우리는 한 국가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세계 사회의 시민이다. 세계화와 정보화는 국경이나 영토와 같은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게 만들었고, 세계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한 국가나 지역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전 세계의 연대와 협력이 요청된다.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해외 원조의 의무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롤스와 싱어를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세계 시민 윤리를 구상하면서, 지구적 차원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원조에 대한 롤스와 싱어의 입장을 소개한다. 이는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원조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과 세계 시민주의의 관점에서 원조를 이해하는 것 모두 필요하고,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가치 판단보다는 각각의 관점을 이해하고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는데 있어 두 관점 모두를 알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구분과 종합적인 이해와 함께 롤스와 싱어를 소개하기도 하나, 전반적으로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와 싱어의 입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서술은 해외 원조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만 제시될 것이 아니라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목적과 특징은 무엇인지, 각각의 긍·부정적인 점을 찾아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고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여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과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적 역량을 함양하게 할 것이며, 세계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윤리적 태도를 탐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표16] 집필 기준 예시: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

교과목	영역	내용요소	하위내용요소	집필 기준(예시)
생활과 윤리	평화와 공존의 윤리	세계 시민 윤리	국제 정의와 해외 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관점을 종합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태도를 탐구할 수 있다.
윤리와 사상	사회 사상		지구적 협력과 세계 시민 윤리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한 세계 시민성의 함양을 위해 집필 기준 예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교과서 탐구 활동 예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 간의 논쟁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윤리적 자세와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표17] 교과서 탐구 활동 자료 예시: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 ①

(가) 세계화란 무엇인가? 광범위한 범주의 다양한 현실과 의미를 포괄하는 용어는 국가와 사회의 연관이 점점 더 높아지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세계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과 행동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 교통이나 통신 비용의 감소와 속도의 증대가 이러한 과정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것은 단지 경제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코카콜라를 마시고 디즈니 만화를 보는 지구촌의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상호연관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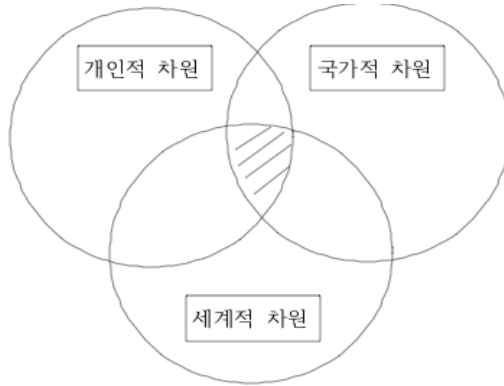
세계화는 세계의 무역·금융 체제를 새롭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삶의 공간을 새로이 인식하게 하여, 가장 국지적이고 낮은 수준에서의 인식 자체를 새로이 확립한다. 즉, 세계화의 힘은 자기 정체성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윌리엄 탭, 『반세계화의 논리』, p.31-

(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살던 지역사회, 도시, 국가에 국한되어 살아간다. 그러나 세계화는 우리가 이와 동시에 지구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독일인, 이탈리아인, 영국인인 ‘동시에’ 유럽이라고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적 통합이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범지구적 차원에서, 우리는 일정 지역에 국한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우리가 ①지구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지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존중 이상의 태도가 요구된다. 또한 ②공정성이 무엇인지, 즉 공정무역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국이 스스로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권을 존중해야 할 때와 글로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규칙 및 규정을 적용해야 할 때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중략)…

우리는 세계화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③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현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도 고루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문화, 환경, 삶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강력한 경제 그리고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p.88-91-

활동 1. (가)의 글을 바탕으로 세계화에 따른 지구촌 윤리를 구상해보세요. 개인,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윤리를 각각 3가지씩 제시하고 3가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활동 2. 활동 1에서 구상한 세계 시민 윤리 중 국제주의적 관점과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들을 분류해보세요.

활동 3. (나)의 ①, ②가 요구하는 세계 시민적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예시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활동 4. (나)의 ③을 근거로 그동안의 세계화의 방식은 어땠는지 유추하여 서술하고, 이를 비판하세요.

활동 5. (나)의 ③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의 세계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관점을 종합하여 자신의 생각을 써보세요.

활동 6. 새로운 세계화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 윤리 5대 현장을 만들어보세요.

[표18] 교과서 탐구 활동 자료 예시: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 ②

(가) 세계 시민주의(cosmopolitanism)는 전 인류를 동포로 보는 입장으로, 국가 간의 구분과 대립이 사라지고, 세계 연방이 실현되어, 모든 인류가 하나의 세계의 시민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이는 국가 혹은 민족 간의 관계와 협조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주의와 구별된다.

-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세계 시민주의](https://ko.wikipedia.org/wiki/세계_시민주의))-

(나)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는 개별 국가의 이해를 초월하여 모든 국가와 민족 간의 협조와 연대를 지향하는 사상으로, 모든 국가의 사람들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으므로 모든 국가들은 서로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시사상식사전, 위키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7218&cid=43667&categoryId=43667>), (<https://ko.wikipedia.org/wiki/국제주의>)

(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올랐다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유엔환경계획이 공개한 '온실가스 격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553억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지구의 온도가 이번 세기에 3.2℃가량 치솟고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2015년 도출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1.5℃ 이하로 제한하고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여전히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했습니다.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묶어 두려면 2020~2030년 사이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7.6%씩, 2℃ 이내로 맞추려면 2.7%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에 미치지 못한 주요국으로 미국, 일본, 브라질 등을 지목했습니다. 유엔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 및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지난 해 온실가스 배출량 사상 최고...파괴적 기후변화 올 수도, 2019.11.2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1688&ref=A>)

활동 1. 세계 시민주의와 국제주의의 특징을 각각 3가지씩 찾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세요.

활동 2. 세계 시민주의와 국제주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가치 내지 태도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가치 및 태도가 (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활동 3. 세계 시민주의와 국제주의가 (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는 각각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활동 4. 세계 시민주의와 국제주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찾아보세요.

[표19] 교과서 탐구 활동 자료 예시: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 ③

<p>(가) 원조의 의무의 역할은 고통 받는 사회들을 만민들의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도록,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만민법의 사회에서 원조의 의무는 모든 사회들이 정의로운 자유적이거나 또는 적정수준의 기본제도들을 가질 때까지 유효하다. ① 이 목표를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② 정치적 자율성의 본질요소들을 보증한다. 즉 국내 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율성, 국제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자유적이고 적정한 국가들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한다. -존 롤스, 『만민법』, p. 179-</p>
<p>(나) 세계 시민법은 국가와 이방인, 국가와 그 국가에 속하지 않은 다른 시민과의 관계를 다룬다. 칸트는 평화적인 이방인은 우호적인 대우를 받을 환대(hospitality)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면서 국제 사회를 세계 시민 사회로 확장한다.</p>
<p>활동 1. ①에 대하여 설명하고, 세계 시민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비판하세요.</p> <hr/> <hr/>
<p>활동 2. 국제 사회의 안정성과 ②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②에 대한 강조가 가지는 함의를 롤스의 인권과 관용의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세요.</p> <hr/> <hr/> <hr/>
<p>활동 3. 칸트의 입장에서 ②에 대해 평가하세요.</p> <hr/> <hr/>
<p>활동 4. 세계 시민주의와 국제주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찾아보세요.</p> <hr/> <hr/> <hr/>

앞서 제시한 모든 활동들은 학생 개인의 탐구활동으로 활용하는 것도 교육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모둠 단위 또는 학급 단위의 탐구 및 토론 활동의 내용으로 삼아도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활동에 제시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대표하는 것으로 모둠을 구성하고, 각각의 관점에서 세계 문제를 바라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해외 원조에 대한 각 사상가들의 주장과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주장을 옹호 또는 비판하는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수업 내용들을 단순 암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보다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삶과 관련된 실천적인 문제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롤스의 인권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사회의 관용과 개입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며, 해외 원조에 대한 논쟁,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종합적 이해는 논쟁적이고 대립적인 주제는 논쟁적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세워나가는 데 도움을 주어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세계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가지게 할 것이다.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모두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해 다양성 속에서 세계 사회를 이해하고, 인류의 공존과 공영을 지향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롤스의 『만민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만민법』 중 해외 원조에 대한 주장만을 다루고 있는 점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확장으로서의 『만민법』이 담고 있는 세계관과 『만민법』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주장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만민법』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서술은 세계 사회의 문제와 해결책을 탐구하는데 보다 다양한 관점을 견지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비판적 문해력을 가지고 세계 사회의 변혁을 위해 실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안드레오티는 그동안의 세계 시민 교육은 세계 사회를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 세계 시민성을 자유와 평등, 관용과 조화와 같은 가치 위주로 생각했다고 비판한다. 그녀는 이 같은 태도가 인류 공존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기본적으로면서도 매우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같은 관점은 세계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기에는 부족하며 세계 사회를 서구 사회의 지향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해한다고 비판하면서, 인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세계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가 서구 사회 중심적, 즉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치를 기반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 시민에 대한 논의 역시 자유 사회의 시민적 가치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본 연구의 출발이 된 롤스의 『만민법』은 교과서에서 국제주의의 대표적 사상으로 제시되고, 국제 정의 및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롤스의 해외 원조에 대한 주장이 제시된다. 그러나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주장은 의무론적 관점에서 싱어, 노직과 비교되어 서술되고, 국제주의적 특징 역시 원조의 성격을 나타내는 데 한정되어 있다. 『만민법』 속에 담긴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과 인권에 대한 롤스의 관심은 추가적으로 서술되거나 보충 자료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원조에 대한 주장이 어떤 생각과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롤스의 원조와 국가 중심적인 국제주의를 둘러싼 논쟁 역시 롤스 이론의 특징 중의 하나로 서술되기보다는 이러한 롤스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 제기되었던 비판과 논쟁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롤스의 관점에서 『만민법』을 이해하고, 비판적 관점에서 『만민법』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과서 서술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 이는 세계 시민이 지녀야 할 윤리적 태도 및 세계 시민의 역량으로서 인권, 관용, 정의,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와 함께 비판적 문해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롤스(John Rawls)의 『만민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만민법』의 도덕교육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만민법』 관련 내용이 삽입된 단원의 서술을 분석하여, 『만민법』의 인권 개념 및 해외 원조와 국제주의에 대한 논쟁을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 탐구 활동을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비판적 문해력(critical literacy)을 통해 세계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만민법』의 배경이 된 『정치적 자유주의』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만민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정치적 자유주의』의 선행적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민주사회 내의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이 국제적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 『만민법』에서 국제 관계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국가들 간의 외교 정책의 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만민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만민법』은 ‘자유적 만민 간의 협력 조건’을 선정하고 이를 위계적 사회에까지 확장하고 위계적 만민들에 대한 관용을 다루는 이상적 이론과 무법국가와 관련한 정의로운 전쟁의 원칙과 고통 받는 사회에 대한 만민의 원조의 의무를 다루는 비이상적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민법』을 통해 롤스는 현존하는 국제 사회의 질서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롤스의 『만민법』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았다. 먼저 롤스가 주권국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설정한 만민(people)은 사회의 주류 성원의 가치관을 대표하여 소수의 권리와 의견을 묵살할 위험성이 있으며, 2차 대전 이후 국가 주권의 영향력이 줄었기에 만민의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해외 원조를 정치적 원조로 한정하는 롤스의 주장은

전 지구적 차원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으로서의 정의, 특히 차등의 원칙을 전 지구적인 정의의 원칙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 지구적 정의 실현을 위한 대안적 정의관으로 센의 비교적 정의관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롤스가 주장하는 국제적 정의관은 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를 반영한 현실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이라는 비판을 살펴보았다. 롤스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근거하여 자신의 국제적 정의관을 전개한다고 하였으나, 이미 자유주의 국가를 전제하면서 자유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민법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이는 롤스가 여전히 국제법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 받는다.

제5장에서는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 롤스의 『만민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만민법』에서 인권은 자유사회가 적정수준의 사회를 관용하는 기준이 되며, 고통 받는 사회에 대한 원조와 무법국가에 대한 전쟁의 근거로 제시된다. 현행 교과서에서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논의를 다루지만, 그 근거가 되는 인권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롤스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덕적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만민법』에서 인권은 국제 사회에서 각 국가의 자율성과 국제 사회의 개입 문제를 탐구하는 데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사회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신의 입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교과서 집필 기준과 교과서 탐구 활동 자료 예시를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 원조를 둘러싼 롤스와 지구적 평등주의자들 간의 논쟁, 국가 중심적인 롤스의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논쟁을 활용하여 폭 넓은 시야로 세계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서 탐구 활동을 자료를 제시하였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따르면, 논쟁적이고 대립적인 주제는 논쟁적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만민법』을 둘러싼 논쟁을 제시하는 것은 『만민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만민법』과 관련 단원의 내용을 교육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만민법』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학생들을 보편적 가

치를 중시하는 윤리적 태도를 가진 세계 시민일 뿐만 아니라 비판적 문해력을 가지고 세계 사회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갖춘 세계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계 사회 및 세계 시민성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중심으로 롤스의 『만민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만민법』과 그 비판적 논의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행 교과서에서 롤스는 국제 정의와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인 원조를 의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상가 중의 한 명일뿐이기에 롤스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만민법』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교과서에서 다루는 『만민법』은 해외 원조의 의무에 대한 롤스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만민법』에서 롤스가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과 자유사회의 질서에 따른 국제 사회의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저작 의도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게끔 교과서를 서술하는 것 역시 한계를 지닌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고 다른 내용과의 연관성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만민법』과 『만민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지, 다른 내용과 연계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교과서의 서술을 분석하고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탐구활동 자료의 예시는 교과서 서술 자체에 대한 보완이 아니기에 보완책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2015 개정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성과 공동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여러 이론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의 탐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모두에서 빈곤과 해외 원조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를 둘러싼 논쟁을 의무와 자선의 논쟁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 있는 점과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단순 비교와 차이점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제시될 수 있다. 『만민법』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논의로 다루어지는 인권이나, 『만민법』의 바탕이 되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신념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만민법』의 인권 개념 및 해외 원조와 국제주의에 대한 논쟁을 고등학교 도덕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롤스의 『만민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이해, 특히 그의 인권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권과 원조의 의무를 함께 이해하면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핵심 주장, 즉 원조의 목적 내지 범위에 대한 논의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해외 원조와 관련하여 지구적 평등을 강조했던 베이츠와 포기 등의 세계 시민주의자들과의 논쟁이 함께 소개되어야 한다. 원조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롤스와 세계 시민주의자들의 차이와 이에 대한 논쟁은 원조를 의무와 자선의 관점 중 어떤 것으로 봐야 할지와는 또 다른 성격의 논쟁으로 해외 원조에 대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과 근거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견해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지구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 문해력을 통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세계 사회를 바라보는 롤스와 세계 시민주의와의 차이점 역시 논쟁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 국가의 시민이면서 세계 사회의 시민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국경과 영토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도 권리와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 롤스의 관점과 세계 시민주의의 각각을 이해하고 어떤 면에서 어떤 관점이 더 적절한지 혹은 어떤 근거로 비판할 수 있을지 자신의 입장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에 원조에 대한 논쟁과 마찬가지로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논쟁을 통해 비판적 관점에서 각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롤스의 저작

Rawls(1985),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 이인탁 역 (1988), 「공정으로서의 정의: 형이상학적 입장이나 정치적 입장이냐」, 106-144, 『공정으로서의 정의』, 파주: 서광사.

Rawls(1993), The Political Liberalism, 장동진 역(2016), 『정치적 자유주의』, 파주: 동명사.

Rawls(1999), Theory of Justice(revised ed), 황경식 역(2003), 『정의론』, 서울: 이학사.

Rawls(1999), The Law of Peoples, 장동진, 김만권, 김기호 역(2017), 『만민법』, 파주: 동명사.

Rawls, edited by Kelly(2001), Justice as Fairness: Restatement, 김주휘 역 (2016),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 서울: 이학사.

2. 관련 논문

1) 국내논문

김남준(2018), “해외 원조의 의무에 관한 윤리적 논쟁-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으로서 ‘해외 원조의 의무’ 분석과 제언”, 윤리교육연구, 47, 315-367.

김남준, 박찬구(2016), “세계화 시대의 세계 시민주의와 세계 시민성: 어떤 세계 시민주의? 어떤 세계 시민성?”, 윤리연구(105), 1-34.

김상범(2016), “세계 시민주의의 도덕교육적 함의”, 윤리연구, 111, 215-256.

- 김은희(2010), “롤즈의 공적 이성 개념의 한계와 중첩적 합의 개념의 재조명”, 철학, 103, 241-274.
- 김준석(2010), “국제원조의 윤리학에 관한 소고-토마스 포제와 존 롤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0(1), 7-36.
- 김진희(2015), “Post 2015 맥락의 세계 시민 교육 담론 동향과 쟁점 분석”, 시민 교육연구, 47(1), 59-88.
- 김태환(2015), “이민정책의 규범적 기초로서 J. Rawls “만민법”의 유용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회 제2015년 하계학술발표논문집, 3,187-3,211.
- 김형렬, 유가현, 정진리, 신지선, 김동언(2019),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도덕과 교과서의 변화: 국가 시민성과 세계 시민성 개념을 중심으로”, 제 30회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145-158.
- 목광수(2011), “아마티어 셴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연구, 93, 149-174.
- 목광수(2018), “아마티아 셴의 전 지구적 정의관”, 철학논총, 94, 171-196.
- 민동석(2016), “세계시민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미디어와 교육, 6(1), 40-46.
- 박성우(2016),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해외 원조의 윤리적 토대”, 평화연구, 24(1), 5-41.
- 박정원(2014), “국제적 정의에 관한 소고: 롤스의 만민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8(4), 311-335.
- 박환보, 조혜승(2016), “한국의 세계 시민 교육 연구동향 분석”, 교육학연구, 54(2), 197-227.
- 배영주(2016), “프레이리(P.Freire) 비판적 문해교육방법을 활용한 실천적 다문화교수법 구상”, 현대사회와 다문화, 6(2), 1-24.
- 백미연(2014), “지구적 빈자(Global poor)에 대한 도덕적 의무와 초국적 정의(Transnational Justice)”, 한국정치학회보, 48(1), 185-205.
- 손경원(2013), “세계화의 양면성과 세계 시민주의의 전망”, 윤리교육연구,

- 30, 273-298.
- 손철성(2011), “롤즈의 인권 개념에 대한 고찰”, *윤리교육연구*, 26, 259-276.
- 손철성(2018), “국제적 정의관으로서 롤즈의 만민법에 대한 고찰-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대립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47, 283-313.
- 송경호(2012), “아시아 인권침해 이미지의 재해석: 존 롤즈의 『만민법』 기획을 중심으로”
- 송훈섭(2003), “플레이어의 비판적 문해교육과 지리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11(3), 47-64.
- 양화식(2011),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에 있어서 중첩적 합의와 공적 이성”, *성균관법학*, 23(1), 493-519.
- 유성상, 이은혜(2018), “Amartya Sen의 토대역량 접근과 교육개발협력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5, 119-143.
- 유주현(2004), “롤즈에서의 정치적 정의관의 정당화 문제”, *철학연구*, 92, 213-237.
- 이봉철(2015),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에 내재되어 있는 ‘배경적 정의 질서’”, *한국정치연구*, 24(1) 329-354.
- 이혜원, 이수정, 박찬호, 김형렬(2019), “글로벌 역량 교육의 핵심 학습요소와 영역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비교교육연구*, 29(4), 1-31.
- 장동진(2001), “롤즈의 국제사회 정의관”, *국제정치논총*, 41(4), 315-336.
- 장동진, 장휘(2003), “칸트와 롤즈의 세계 시민주의”, *정치사상연구*, 9, 195-222.
- 정원섭(2012), “인권의 현대적 역설: 롤즈의 민주적 평화론에서 인권”, *철학*, 112, 173-191.
- 차승한(2018). “세계시민교육의 요청에 대한 도덕과의 현황 진단”, *도덕윤리과교육연구*(59), 161-184.
- 최기성(2008), “가치 다원사회에서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이 지니는 사상적 합의”, *정치사상연구*, 14(1), 33-54.

- 최기성(2009), “롤즈 ‘만민법’의 사상적 함의” 대한정치학회보, 17(1), 51-71.
- 최연식, 임유진(2016), “정치시민, 세계 시민, 그리고 군자시민”, 사회사상과 문화, 19(2), 33-65.
- 홍성우(1996), “롤즈의 중첩적 합의론”, 범한철학, 13, 327-354.

2) 해외논문

- Andreotti(2014), “Soft versus 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Development Education in Policy and Practice, 21-31.
- Beitz(2000), “Rawls’s law of peoples”, Ethics, 110(4), 669-696.
- Bromley(2009). “Cosmopolitanism in Civic Education: Exploring Cross-National Trends, 1970-2008”. Current Issues in Comparative Education. 12(1). 33-44.
- Buchanan(2000), Rawls’s Law of Peoples: Rules for a Vanished Westphalian World, Ethics, 110(4), 697-720.
- Caney(2002), Cosmopolitanism and The Law of Peoples,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0(1), 95-123.
- Follesdall(1997), The Standing of Liberal States: Stability and Toleration in John Rawls "Law of Peoples", SCHRIFTENREIHE-WITTGENSTEIN GESELLSCHAFT, 25, 165-174.
- Freeman(2006), The Law of Peoples, Social Cooperation, Human Rights, and Distributive Justice, Social Philosophy & Policy Foundation, 23(1), 29-68.
- Meyer, Bromley, & Ramirez(2010), “Human Rights in Social Science Textbooks: Cross-National Analyses, 1970-2008”, Sociology of Education, 83(2), 111-134.
- Moon, & Koo(2011), “Global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A

- Longitudinal Analysis of Social Studies and Ethics Textbooks in the Republic of Korea”,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55(4), 574-599.
- Ramirez, Bromley, & Russell(2009), “The Valorization of Humanity and Diversity”,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1(1), 29-54.
- Tan(2001), *Critical Notice*,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31(1), 113-132.
- Wong(1991), “The Evolution of Social Science Instruction, 1900-86: A Cross-National Study”, *Sociology of Education*, 64(1), 33-47.

3. 단행본

1) 국내본

- 김만권(2004), 『불평등의 패러독스: 존 롤스를 통해 본 정치와 분배정의』, 서울: 개마고원.
- 박성춘(2016),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파주: 집문당.
- Waters(1995), *Globalization*, 이기철 역(1998), 『세계화란 무엇인가』, 서울: 현대미학사.
- Sandel(1998),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이양수 역(2012), 『정의의 한계』, 서울: 멜론.
- Stiglitz(2002),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송철복(2002), 『세계화와 그 불만』, 서울:세종연구원.
- Stiglitz(2006), *Making Globalization Work*, 홍민경 역(2008),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파주: 21세기북스.

2) 해외본

Beitz(1979), *Pol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Costa(2011), *Rawls, citizenship, and education*, Taylor & Francis.

Mandle, & Reidy(2015), *The Cambridge Rawls Lexic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ogge(2002), *World Poverty and Human Right*, Polity Press.

Wenar(2011), “21, Rawl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3) 교육과정 및 교과서 집필기준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집필기준[국어, 도덕, 경제, 역사].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7-74호 [별책 6].

4) 교과서

김국현, 강수정, 김동창, 최상권, 박보람, 안영순, 배병대, 문경호, 이상희, 이병기(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비상교육.

류지한, 이창희, 한재훈, 김동창, 이지명, 임정환, 박준식, 배병대, 박기승(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 비상교육.

박찬구, 양일모, 최유진, 정원섭, 박지운, 안인선(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 씨마스.

변순용, 이희평, 윤영돈, 김철순, 이승주, 김오섭, 이은규, 이대우, 전순규, 강혜원, 한보라(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천재교과서.

변순용, 한보라, 황광욱, 변희순, 최준화, 서대원, 장승구, 장규언, 김현, 김
남준, 임상수(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 천재교과서.

정창우, 홍석영, 문일호, 정선우, 김창훈, 이상일, 이수빈(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미래엔.

정창우, 홍석영, 박학래, 김형렬, 문일호, 정선우, 이상일, 강민지. 신종섭,
이수빈(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 미래엔.

정탁준, 장동익, 조주현, 추정완, 박임희, 안번기, 노유리, 신방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지학사.

차우규, 이재현, 이진희. 권윤호, 윤인철, 안인선(2019),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금성출판사.

황인표, 정상봉, 장동익, 이인재, 손철성, 황성규, 박수경, 강승희. 안번기,
권영신(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 교학사.

ABSTRACT

A Study of Rawls's *The Law of peoples* : Implications for Ethics Education

Shin Jisun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a critical review of Rawls's *The Law of Peoples (LP)*, this study aims to propose its implications for ethics education. In *LP*, Rawls offers a political conception of international justice beyond the individual state by extending his theory for domestic justice as fairness represented in *Political Liberalism*. In particular, he provides a modified view of a hypothetical contract device whereby the contracting parties are representatives of peoples who can choose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norms of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Rawls's *LP* has received much criticism for its key assumptions that the parties who choose principles of global justice are not individuals but peoples (i.e., the inadequate use of the term "peoples") and that members living in well-ordered societies do not owe to the members of other societies the same sort of justice that they owe to one another (i.e., an anti-cosmopolitan stance).

In the light of such criticism, this study analyzes how Rawls's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justice elaborated in *LP* are interpreted in high school 'Life and Ethics' and 'Ethics and Thought' textbooks. On the basis of the textbook analyses,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ways in which Rawls' central ideas in *LP* and its criticism, including Rawls's support for basic human rights, the debates between internationalism and cosmopolitanism, can be best utilized in high school ethics textbooks. In doing so, it ultimately argues that Rawls's work on *LP* should be incorporated in secondary ethics curricular in a way that it can foster students' ability to appreciate universal values shared in a global community and to critically engage in global issues and phenomena.

Student Number: 2019-28469

Key Words: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Human Rights, Foreign Aid, Internationalism, Cosmopolitanism,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thics Education